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가전제품편



가이드라인 편집위원회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허혜인 과장, 이정현 연구관, 김남진 사무관,
김미연 주무관, 김한나 전문위원, 임두리 (전)과장, 김혜진 (전)연구관

공공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 김인숙 팀장, 강민영 과장

산업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엄정웅 과장

삼성전자 김진엽 프로

LG전자 정성현 책임, 이동식 책임

SK매직 김영진 매니저

쿠쿠전자/쿠쿠홈시스 성준호 차장

세라젬 길선주 매니저

오텍캐리어 정원재 팀장

쿠첸 이윤희 과장

코웨이 이강진 수석

청호나이스 김정욱 과장

위닉스 임형석 책임

휴롬엘에스 안성용 팀장

전문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

(주)켄릭 김진용 대표

CONTENTS

01

배경 및 목적

- | | |
|--------------------------|----|
| 1. 추진 배경 및 가이드라인 의의 | 05 |
|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제도 개요 | 08 |
| 3. 가전제품 안전관리의 적용 대상 | 12 |
| 4. 가전제품 안전관리의 이해당사자 | 13 |

02

살생물처리 가전제품 관리 규정

- | | |
|------------------------------|----|
| 1. 용어 정의 | 15 |
| 2. 「화학제품안전법」의 목적과 핵심 규정 | 19 |
| 3. 규제 이행을 위한 중요 일정과 정보 확인 방법 | 28 |
| 4. 살생물제의 구분 및 그에 따른 의무 | 46 |
| 5. 이해당사자별 안전관리 의무사항 및 이행 방법 | 51 |

03

가전제품 부품 유형별 관리 방법

- | | |
|-----------------------------|----|
|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부품 | 71 |
| 2. 현장발생형 살생물제 부품 | 82 |
| 3. 비화학적 방법에 의한 미생물 억제·저감 부품 | 85 |

04

가전제품 항균처리 광고 사례

88

05

묻고 답하기(Q&A)

96

Part

1

추진 배경 및 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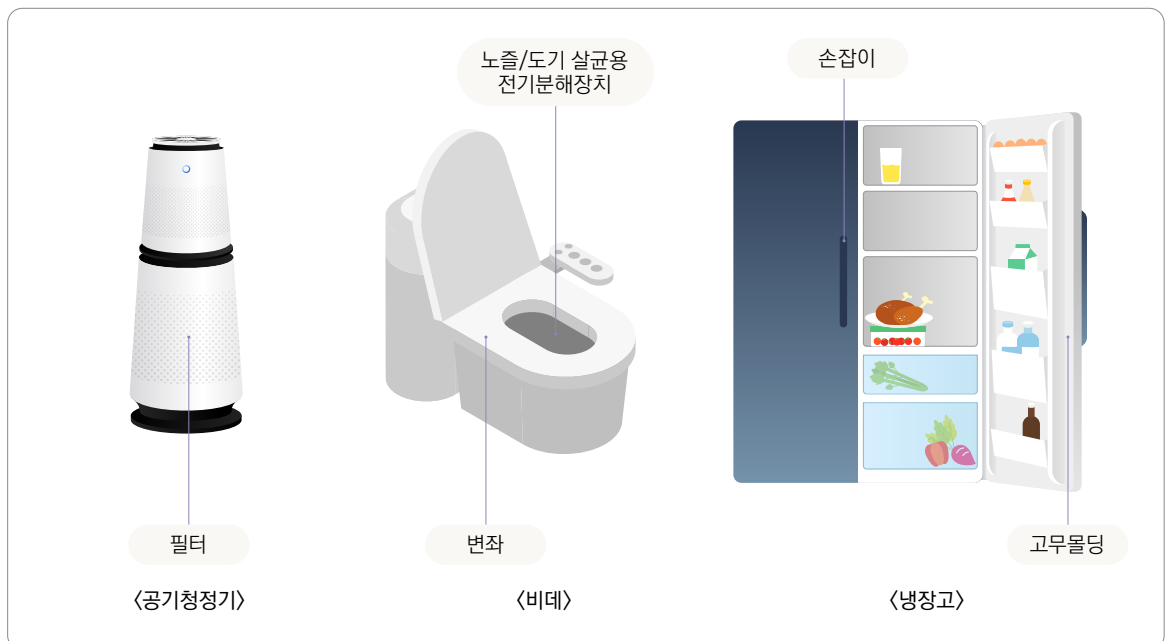
- 1 추진 배경 및 가이드라인 의의
-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제도 개요
- 3 가전제품 안전관리의 적용 대상
- 4 가전제품 안전관리의 이해당사자

추진 배경 및 가이드라인 의의

1.1 배경 및 목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19.1 시행)에 따라 살균·살충·살서 등 유해생물의 제거, 무해화,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살생물물질·제품은 유해성·위해성을 사전에 입증·검증(승인)하여 안전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이 가능하며**, 그 외에 보존이나 미생물 증식 억제 등 제품에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보존제 등으로 처리한 살생물처리제품**은 승인의 의무는 없지만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해야하는 등 법의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가전제품**은 보존 또는 향균처리된 냉장고·공기청정기·식기세척기·세탁기·전자레인지 등 다양한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복합제품**으로, 가전제품 제조사 뿐 아니라 가전제품 부품의 제조·수입사도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주체로서 「화학제품안전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 판매자·판매중개자·구매대행자도 적법한 살생물제를 취급하고 판매할 의무가 있습니다.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부품이 장착된 가전제품 예시〉

다만, 현재는 **살생물제품이나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해 산업계가 제도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용이 일정 기간 유예**되고 있으므로, 가전제품 업계를 포함한 살생물제 취급 업체들이 사용하는 살생물물질을 적법한 물질로 전환하거나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항균력을 주장하지 않는 등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령,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보존 처리된 고무, 플라스틱, 필터 등에 “항균”, “바이러스 제거”, “항균력 99.9%” 등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살생물제품의 승인에 대한 경과조치가 만료되는 '25년 12월 이후부터**는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불법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제조사뿐 아니라 가전제품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 제조·수입사에도 본 가이드라인을 배포·안내하여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의 **경과조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유통망 내 사용하는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신고·승인 여부뿐 아니라 사용되는 부품의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꼼꼼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하는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을 적법한 살생물제로 제때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표시·광고의 경우 일단 시장에 출시되고 나면 회수가 어렵고 수정이나 정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부적절한 표시·광고는 삭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소비자원 및 가전제품 사업자정례협의체(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 쿠쿠전자/쿠쿠홈시스, 세라젬, 오텍캐리어, 쿠첸)가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가전제품산업 이해 당사자별 살생물제 관련 의무와 이행사항에 대해 업계 여건을 반영하여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가전제품편)」**을 정부와 산업계가 손을 잡고 마련하였습니다.

1.2 가이드라인의 의의

적법한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물질·제품·처리제품)의 제조·수입·판매·유통, 적절한 표시·광고, 제품의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한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는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전제품 제조사, 부품의 제조·공급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여되어 있어 이해관계자별, 취급 살생물제 및 승인유예·경과조치 기간별로 차별화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전제품 산업계 이해관계자별, 안생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의 경과조치 기간별 기업의 의무와 이행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가전제품 및 가전제품 부품 제조·수입사, 판매유통자 및 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 **유통망 내에서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살생물제 제도이행을 위한 노력, 비용의 중복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 가전제품이나 가전제품 부품 사업자들 스스로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 유통 시** 판매자의 추가적인 **광고 내용**에 관한 확인 등 제조·수입·판매·유통자의 국민 안전에 대한 노력으로 가전제품이나 가전제품 부품의 안전성을 높일 뿐 아니라 **살생물물질(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가전제품 환경, 살생물제로부터의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 안전성·효능 검증 제도는 유럽 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이미 운영 중인 제도로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처리제품의 안전기준(승인된 살생물제 사용) 및 표시·광고 이행시, **현재 시행 중인 미국·유럽 등의 살생물제 규제 수준**에도 부합하게 되므로 가전제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효과**도 가집니다.

다만, 이 안내서는 향후 법령 등이 개정되거나 법률 유권해석, 정책적 판단이 변화되는 경우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현행 법률, 시행규칙, 고시 등이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든 자료로, 관련 법령 및 상위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법령과 상위규칙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 안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국내 가전제품 기업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제·개정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시	비고
가이드라인 제정	2025년 2월	
가이드라인 개정	2025년 12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제도 개요

2.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제도 개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을 기반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으로 지정하여 품목에 따라 설정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를 하거나 안전성 및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 및 살생물제 구분〉

분류	품목	신고/승인	살생물제품·처리제품 구분
세정제품	세정제 / 제거제	신고	보존제 사용시 살생물처리제품
세탁제품	세탁세제 / 표백제 / 섬유유연제	신고	
코팅제품	광택 코팅제 / 특수목적코팅제 / 녹 방지제 / 윤활제 / 다림질보조제 / 마감제 / 경화제	신고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 접합제 / 경화촉진제	신고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 탈취제	신고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신고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부동액	신고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 인주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신고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신고	
여가용품 관리제품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신고	살생물제품
살균제품	살균제 / 살조제	신고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승인	
구제제품	기피제	신고	
	보건용 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승인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제	신고	살생물처리제품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신고	
기타	초 / 습기제거제 / 인공 눈 스프레이 / 공연용 포그액	신고	보존제 사용시 살생물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승인	

'26년 현재 안생품은 총 43개 품목으로 그중 세정제 등 35개 품목은 신고대상 안생품으로, 감염병 예방 및 보건용 살생물제품과 가습기 관련 제품 8개 품목은 승인대상 안생품으로 구분하여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고대상 안생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제품내 함량, 용기·포장·중량, 어린이보호포장 등) 준수 여부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https://chemp.mcee.go.kr>)을 통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하여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제품에 표시하여 시장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안생품 품목중 「화학제품안전법」 제9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승인대상 안생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내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제품의 성분, 용도 및 제형, 표준사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화학적 위해성과 위해의 예방 방법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이미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생품이라 하더라도 살생물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동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살균제, 살조제, 살충제, 기피제 등과 같이 살생물제품에 해당이 되는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 등에 따라 살생물제품 승인유효 종료시점까지 살생물제품으로써 승인을 받고 살생물제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부칙제3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이후 1년 동안 살생물제품에 대한 표시기준은 유예 가능합니다.

승인유효기간이후에는 안생품 품목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안생품으로 제조·수입이 불가하며, 유효기간 종료후 6개월후부터는 판매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법 부칙 제4조 2. 판매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2.2 살생물제 안전관리제도 개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모든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유해성·위해성을 검증하여 **안전하고 효과가 확인**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이 허용**됩니다.

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효능 등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살생물물질에 한해 제조·수입을 허용합니다.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 내 함유 물질의 유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전성과 효능 평가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살생물제품**에는 **승인된 살생물물질(승인물질의 제조·수입사도 동일해야 함)**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의 보존 또는 항균 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보존제 등의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승인의 의무는 없지만,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승인된 용도에 맞게** 사용(안전기준)하여야 하며, 처리제품의 효과를 알리려는 경우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살생물제의 개념 및 예시〉

살생물제	개념	예시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에탄올, CMIT/MIT 등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중 ①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②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소독제, 살충제, 살서제, 보존제 등
살생물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제품	보존처리된 에어컨 필터, 가죽, 플라스틱, 섬유 등

한편, 법 시행 전('19.1.1)에 국내 유통된 살생물물질은 산업계의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기업이 기후에너지 환경부에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를 통해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살생물물질의 용도·유해성·위해성 등에 따라 **'23년부터 최대 '29년까지 승인유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승인된 기존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2년** 내에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국내 제조·수입·판매·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살생물제품의 경우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이 1년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에 대한 **경과조치**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2년**이며,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기존살생물물질로 고시되지 않았거나, 지정 해제·제조수입 금지시 해당 기간은 단축됩니다.

특히 동일한 살생물물질이라도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유형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이 달라지며, 이 물질을 사용한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의 경과조치 기간이 연동되어 달라지므로, **물질별·제품별 해당 살생물제품유형과 상세 승인유예기간, 승인 여부 등 확인이 중요합니다.**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살생물제품 유형		• 살균제* • 살조제 • 살서제 • 살충제** • 기피제	• 목재용 보존제 •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제품보존용 보존제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건축자재용 보존제 • 재료·장비용 보존제 • 사체·박제용 보존제 •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유예기간	물질	~ '23.12.31	~ '24.12.31	~ '27.12.31	~ '29.12.31
	제품	~ '25.12.31	~ '26.12.31	~ '29.12.31	~ '31.12.31

* 현장발생형 살생물물질 및 **미생물 살생물물질의 경우 '29년 12월 31일까지 승인 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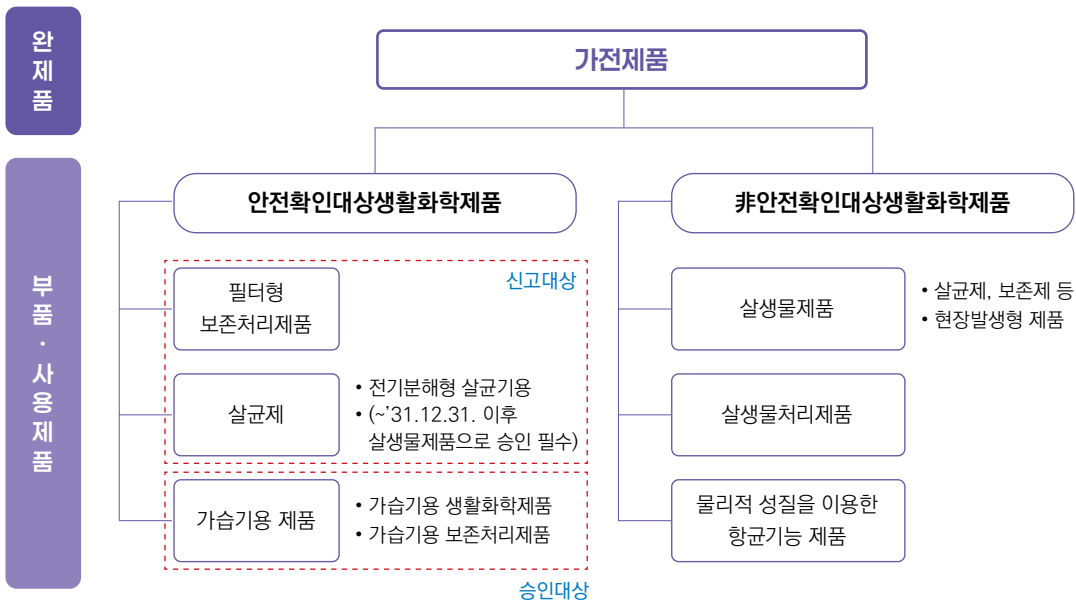
**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1년 추가 연장(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25.12.31 개정)

만약 해당 제품이 **살균·소독제·살충제·기피제**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주장을 하면 제품의 형태(섬유, 플라스틱, 가죽 등)와 상관없이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며, **'26년 1월** 부터는 **미승인된 살생물제품으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살생물처리제품**에는 **처리제품에 부합하는 제한된 효과 주장만** 가능합니다.

가전제품 안전관리의 적용 대상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된 가전제품의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생품 및 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생품과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적용되는 시점 및 관리 규정이 다소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안생품의 경우 현재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5항 등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품목과 동법 제10조제6항 등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구분되어 해당 품목별로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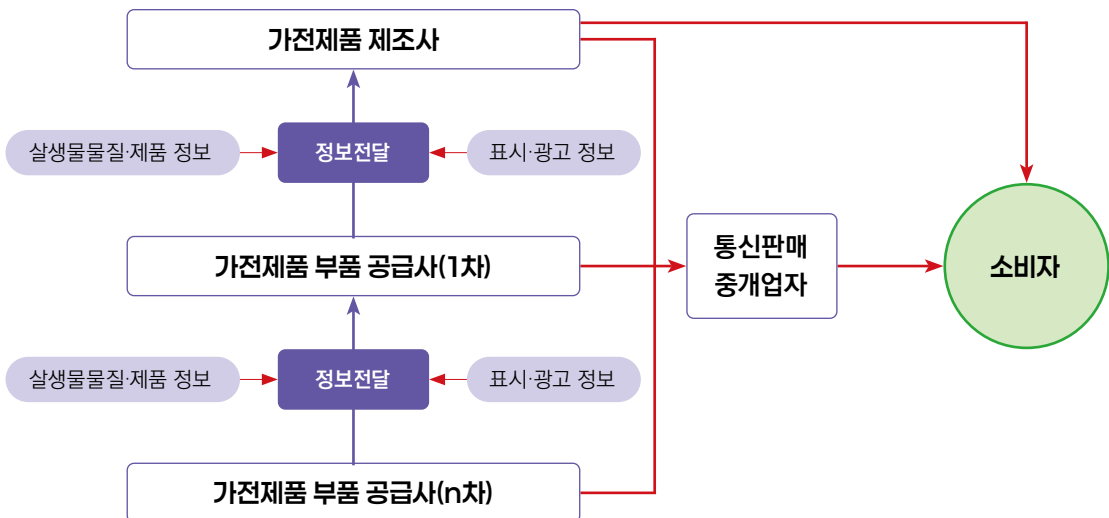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안생품과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등에 따라 각각의 제도 이행을 위해 지켜야 할 규정, 이행 방법 등을 가전제품 제조사, 부품 공급사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전제품 안전관리의 이해당사자

「화학제품안전법」에 적용받는 가전제품은 최종 완제품의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완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제조 과정에서 살생물 기능을 취급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의 모든 공급망의 주체에게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즉, 살생물제가 처리된 가전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이해당사자는 **가전제품 제조사와 수입사**는 물론이고, 가전제품 **부품(가전제품에 잔존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부자재 포함)**을 공급하는 **공급자**, 그리고 가전제품 제조사나 수입사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도 포함됩니다.

가전제품 안전관리의 핵심 주체인 가전제품 제조사 및 부품 공급사, 통신판매자 등 각 이해당사자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2부 5.이해당사자별 안전관리 의무사항 및 이행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rt

2

살생물처리 가전제품 관리 규정

- 1 용어 정의
- 2 「화학제품안전법」의 목적과 핵심 규정
- 3 규제 이행을 위한 중요 일정과 정보 확인 방법
- 4 살생물제의 구분 및 그에 따른 의무
- 5 이해당사자별 안전관리 의무사항 및 이행 방법

용어 정의

1.1 생활화학제품

1.1.1. 생활화학제품(「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3호)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1.1.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4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1.2 살생물제

1.2.1. 살생물물질(「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7호)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 등')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합니다.

1.2.2. 살생물제품(「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8호)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1.2.3. 살생물처리제품(「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9호)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제품을 말합니다.

1.3 살생물제 안전관리제도 개요

1.3.1. 광고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등 살생물제의 정보, 사용 용도, 효과 등에 대해 다양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3.2. 주장

광고나 표시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사용 지침이나 매뉴얼과 같은 정보에 포함된 문구, 표 또는 그림을 주장이라 합니다.

특히 효과·효능에 대한 주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 제품이 유해생물 또는 원치 않는 생물에 대해 어느 정도로 보호되고 있는지 드러내거나 암시하는 것
- 제품이 유해생물 또는 원치 않는 생물에 대해 특정 효능 또는 작용이 있는지 드러내거나 암시하는 것

1.4 제품의 살생물 기능과 목적

1.4.1. 제품의 살생물 기능

제품이 가진 여러 기능 중 하나로서, **제품 이외의 대상(제품 사용자 등)**에 대한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을 말합니다.

1.4.2. 제품의 보호

제품에 대한 살생물처리의 효과를 뜻하며, **제품 자체의 부패 방지나 제품 자체에 대한 세균과 곰팡이의 성장 억제**를 말합니다.

※ 제품의 보호 효과는 제품 외부에 대한 영향이 없으므로 제품의 살생물 기능으로 보지 않음

1.4.3. 제품의 주된 목적(살생물제품)

제품의 살생물 기능이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중의 건강보호를 주장하는 경우
-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에 해당하는 경우

1.4.4. 제품의 부수적 목적(살생물처리제품)

제품에 살생물 처리를 하였지만, 제품의 부수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자체의 보존이나 보호만 목적으로 하는 경우(대부분)
- 제품의 살생물 기능이 있지만 주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4.5.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제품에 대한 주장 중에서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생물을 제거 또는 억제하여 제품의 사용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과 안전상의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명확히 드러내거나 암시하는 주장입니다.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의 판단 기준〉

- 가. (질병 예방) 사용자나 다른 사람들의 질병 예방 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로, 특정 질병에 대한 효과 또는 통칭하여 '질병 예방'을 주장
- 나. (특정 유해한 생물 제거) 사용자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지만,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생물의 종류를 명시하거나 해당 생물을 제거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제품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 다. (암묵적 주장) 제품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항균 등 살생물 효과·효능을 주장하여 암묵적으로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을 하는 경우

1.4.6. 주기능

제품의 여러 기능 중에서 해당 기능이 없을 경우 제품의 가치가 현격히 저하되는 기능 또는 다른 기능에 비해 특별히 강조한 기능을 말합니다.

〈주기능 판단 기준〉

- 가. 제품에서 살생물 기능이 없으면 제품의 가치가 현격히 저하되는 경우(살균, 소독, 살충, 방충 등을 주장하는 경우 포함)
- 나.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유일한 기능인 경우
- 다. 제품의 명칭 또는 명칭의 위치에 항균이나 방충 등을 뜻하는 유사 용어(제균,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항진드기 등)를 사용하는 경우
- 라. 살생물 기능을 주장하면서 99.9% 제거 등 구체적인 효능을 주장하는 경우
- 마. 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 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

1.4.7. 복합제품

원칙적으로 두 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은 복합제품입니다. 복합제품 중 하나의 부품이 살생물처리제품이고 그로 인해 복합제품의 살생물 효과와 효능을 주장할 경우, 복합제품 제조·수입자는 법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판매 시에 가전제품 고무패킹 등에 항균처리를 하였다는 사실을 광고나 주장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경우, 가전제품 사용안내서에는 고무패킹 등의 항균처리에 대한 안내(표시의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4.8. 기존살생물물질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로서 제조자나 수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신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한 물질을 말합니다. 고시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해당하면 법 제18조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이, 기존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법 부칙제3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1.4.9. 현장발생형 살생물제품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8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현장에서 전기분해, 광분해 등의 반응에 의해 살생물물질을 발생시키는 살생물제품을 말합니다.

※ UV 살균은 화학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발생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UV와 촉매를 이용하여 살생물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현장발생 살생물제품에 해당

1.4.10. 나노물질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0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화학제품안전법」의 목적과 핵심 규정

2.1 「화학제품안전법」의 목적(「화학제품안전법」 제1조)

「화학제품안전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2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범위(「화학제품안전법」 제5조)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학제품안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단,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
-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單味飼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補助飼料)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처리물질
-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2.3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1항~제5항)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예방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법 제7조) 및 위해성평가(법 제8조)를 바탕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대상**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
- **조사항목**
 - ①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제조·수입·판매량 및 용도에 관한 사항
 - ② 생활화학제품의 성분·배합비율 및 유해성에 관한 사항
 - ③ 그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 **조사방법** : 서면조사(필요시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 사용)

실태조사 결과, 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이 우려되거나,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크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경우 법 제8조 등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생활화학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위해성평가 결과 그 유해성이 매우 커서 그 위해를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 전에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제품내 함량, 용기·포장·중량, 어린이보호포장 등) 적합 여부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3년마다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받은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4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6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지정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중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은 법 제10조제6항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 주성분을 제외한 함유물질의 명칭, 배합비율, 용도, 효과·효능, 안전성 등의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5 신고·승인대상 안생품의 살생물제품 승인(「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8항 등)

현재는 안생품에 해당하는 제품이지만,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에 해당한다면 살생물제품 유형별 유예기간내에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신고대상 안생품'은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가 있으며, 앞서 제1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는 '25년 12월까지, 목재용 보존제는 '26년 12월까지 승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승인대상 안생품'에 해당하는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는 '25년 12월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안생품으로서 신고했거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살생물제품에 해당한다면 승인유예기간내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유예기간이후에는 더 이상 안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 다만,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1년 추가 연장(예시, 살균제 제품 승인을 '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해당 제품의 승인유예 기간은 기존 '25년 12월 31일에서 '26년 12월 31일로 연장)

2.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8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을 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제8항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반드시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한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한글 활자의 크기가 더 크게 표시하여야 함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또한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세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 | | | |
|------------------|-----------------------------|----------------|
| • 품목 | • 표준사용량 | •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
| • 제품명 | • 효과·효능(승인대상 제품) | • 신호어 및 그림문자 |
| • 용도 및 제형 | • 제조자, 주소, 연락처(국내 제조제품에 한함) | • 사용방법 |
| • 제조연월 | • 판매자, 주소, 연락처 | • 사용상 주의사항 |
| • 유통기한 | •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수입제품에 한함) | • 응급처치 |
| • 중량·용량·개수·매수·크기 | • 수입자, 주소, 연락처(수입제품에 한함) | • 안전기준확인 마크 |
| • 어는점 | •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대상 제품에 한함) | •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
| • 액성 | | |

2.7 살생물물질 승인(「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제1항)

살생물물질은 함부로 제조, 수입,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은 승인받지 않아도 됩니다.(「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화학물질안전원고시) 참조)

또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에 해당하면서(이하 “기존살생물물질”),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승인유예기간 동안 물질승인을 받지 않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제1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별표1)

- 2023년 12월 31일까지 :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살생물제품 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 2024년 12월 31일까지 :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살생물제품 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살생물제품 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 2029년 12월 31일까지 :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 · 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제품 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 다만, 상기 승인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단축·연장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최신정보 및 대상 물질의 제조·수입사 확인 필요

2.8 살생물제품 승인(「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제1항)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살생물제품에는 **승인받은 살생물물질** 또는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화학물질안전원고시)만 **사용**해야 하며, **승인** 받은 **살생물제품**만 시장 **유통**이 가능합니다. 기존살생물물질이 승인되는 경우, 물질의 승인유예기간으로부터 2년 이내에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의 위해성, 효능 시험자료 등 미리 제품승인 준비를 해야만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내에 승인완료가 가능합니다.(「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는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물질의 승인유예기간 +2년이지만,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 아니거나, 지정이 해제, 제조·수입이 금지된 경우,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가 단축됨**(법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

다만 보존제 등의 살생물제품을 직접 제조·수입하지 않고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이후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반드시 승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승인유예기간 이내라면 「화학제품안전법」 부칙제3조에 따라 적법한 살생물제품인지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2029년 12월 31일까지 :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2031년 12월 31일까지 :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 · 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 다만, 「화학제품안전법」(법률 제15511호)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상기 승인유예기간에 1년 추가 연장
이외에도 동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단축·연장된 경우가 있으므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최신 정보 확인 후 법 부칙제3조에 따라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산정 필요

2.9 살생물제품의 표시기준(「화학제품안전법」 제27조)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살생물제품 표시사항〉

- | | | |
|--------------------|--------------|---------------|
| • 살생물제품유형 | • 사용량·용법 | • 중량·용량 |
| • 승인번호 | • 제품 유해성·위험성 | • 제조·수입자 정보 |
| • 제품명 | • 사용상 주의사항 | • 유통기한 |
| •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성분) | • 응급처치 | •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 |
| • 효과·효능 | • 보관 및 폐기방법 | •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 |
| •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 | (대상제품에 한함) |

※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참조

2.10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제1항)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 경과조치기간이 지나면 살생물처리제품에는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수입 제품의 경우 유사성 기준을 충족) **사용**해야 하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살생물처리제품**만 시장 유통이 가능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승인 물질 포함), 해당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으로부터 2년 이내에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과조치기간이 종료되기전에** 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의 적법** 여부, **표시·광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제도이행을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 것(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유사성 기준 :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통하여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해당 살생물제품유형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국내 승인된 물질로 승인된 살생물제품유형으로 사용될 경우 등

2.11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제2항)

2.11.1. 표시사항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사항〉

가.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나.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다.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그 함유 사실**

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사용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시 부여된 처리제품의 표시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제시된 표시사항 외 질병 예방 등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이나 특정균 제거 성능 등 ‘주기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다면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2.11.2. 표시 방법

표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 방법〉

가.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다.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라.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2.11.3. 안전·표시의무 이행 시기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의무는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으로부터 2년까지 유예됩니다.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4조)

〈살생물제품유형별 유예기간〉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로 처리한 살생물처리제품
※ 다만, 공산품 등 고형 완제품에 살생물처리를 할 때에는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를 사용할 일이 없으며, 대부분 보존제로 처리함
- 2028년 12월 31일까지 :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로 처리한 살생물처리제품
- 2031년 12월 31일까지 :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로 처리한 살생물처리제품
- 2033년 12월 31일까지 :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로 처리한 살생물처리제품

※ 다만, 부칙 개정('25.12.31.)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이 1년 연장된 경우, 해당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살생물처리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적용 또한 함께 연장된 것으로 판단해야 함
이외에도 동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단축·연장된 경우가 있으므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최신 정보 확인 후 법 부칙제4조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경과조치기간 산정 필요

규제 이행을 위한 중요 일정과 정보 확인 방법

3.1 「화학제품안전법」 추진 경과 및 규제 이행을 위한 중요 일정

「화학제품안전법」은 2019년 시행되어 2031년까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이 모두 완료됩니다. 업체가 다양한 목적으로 취급하는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에 대해 살생물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간**을 고려하여 규제 이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을 **직접 제조·수입**한다면 미리 **승인준비**를 하고 **승인유예기간내 승인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업체로부터 살생물물질·제품을 공급받는다면 승인유예기간 이후에는 공급받는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의 승인여부**, 승인유예기간 이내라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여부 등 일정에 맞게 **필요한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목록은 고정된 정보가 아니라, 승인여부 등에 따라 **변경**되며, 특히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업체들의 자진취하·불승인 등의 이유로 물질 목록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고시된 물질 목록을 “3.3. 적법한 살생물물질 확인 방법”에 따라 다시 확인하여 목록에 없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1.1. 추진 경과

(1) 법령

2019년

- ▶ ('19.1.1.)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18년 12월31일 이전 유통 살 생물물질 →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 시 승인유예 부여

2020년

- ▶ ('20.3.24.) 신고·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 공개 규정 신설, 기존살생물물질 상시 신고제도, 포상금 제도, 척추동 물시험 최소화 원칙 도입 등

2021년

- ▶ ('21.1.1.) 하위법령 개정·시행 → 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품 품질관리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한시적 승인면제 절차, 신 고·승인 사항과 다른 효능 표시·광고 금지 등 규정 신설

2025년

- ▶ ('25.12.31.) 부칙 개정·시행 →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 승인유예기간 1년 추가 연장

(2) 살생물물질



(3) 살생물제품

2024년

- ▶ ('24.12.3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살생물제품유형 15개 첫 승인
 - ▶ ('24.12.31.) 미승인(~'23.12.31)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는 '24년12월까지만 제조·수입 가능
- ※ 다만,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조·수입금지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둘 중 먼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까지만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판매·유통이 가능하므로, 24년 12월 이전이라도 제조·수입금지 제품 존재

2025년

- ▶ ('25.6.30.) '23년 12월까지 미승인된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균제·살조제·살충제·기피제는 '25년 6월까지만 판매·유통 가능
 - ▶ ('25.12.31.) 미승인(~'24.12.31)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는 '25년 12월까지만 제조·수입 가능
 - ▶ ('25.12.3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197개 승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및 구제제로 신고·승인된 제품이라도 이때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함)
- ※ 다만, '24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 승인유예기간 지속(~'26.12.31)

3.1.2. 향후 일정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살생물제품 승인경과조치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의 경과조치는 다음의 일정을 따르지만, 일부 물질의 경우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이 단축·연장된 경우가 있으므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최신정보를 확인하고 업체가 취급하는 살생물물질의 용도(살생물제품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확인하고, 만약 업체가 취급하는 살생물제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한다면 법 부칙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경과조치를 따로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살생물물질

2027년

- ▶ ('27.12.3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살생물제품유형의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

2028년

- ▶ ('28.1.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살생물제품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승인된 물질만 제조·수입·판매·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2029년

- ▶ ('29.12.3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제품유형의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
- ▶ ('29.12.31.) 현장발생형·미생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

2030년

- ▶ ('30.1.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제품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승인된 물질만 제조·수입·판매·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 ▶ ('30.1.1.) 승인된 현장발생형·미생물 기존살생물물질만 제조·수입·판매·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2) 살생물제품

2026년	▶('26.1.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하는 의무 시작 ▶('26.1.1.) 단순히 살생물처리가 된 필터, 섬유 등의 제품이라도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기능을 주장(표시·광고 등)하는 경우,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벌 시작 ▶('26.7.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26.12.3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종료
2027년	▶('27.1.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 하는 의무 시작 ▶('27.1.1.) 단순히 살생물처리가 된 목재 등의 제품이라도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기능을 주장(표시·광고 등)하는 경우,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벌 시작 ▶('27.7.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2028년	▶('28.12.31.) 미승인(~'27.12.31)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 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는 '28년 12월 31일까지만 제조·수입 가능
2029년	▶('29.12.3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승인유예기간 종료
2030년	▶('30.1.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는 승인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 하는 의무 시작 ▶('30.1.1.) 단순히 살생물처리가 된 액상 제품, 섬유, 의류, 가죽, 플라스틱 등의 제품이라도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기능을 주장(표시·광고 등)하는 경우,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벌 시작 ▶('30.7.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30.12.31.) 미승인(~'29.12.31)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는 '30년12월까지만 제조·수입 가능 ▶('30.12.31.) 미승인(~'29.12.31) 현장발생·미생물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30년12월까지만 제조·수입 가능

2031년

- ▶ ('31.12.3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종료
- ▶ ('31.12.31.) 현장발생형·미생물 살생물물질이 사용된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종료



2032년

- ▶ ('32.1.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 하는 의무 시작
- ▶ ('32.1.1.) 단순히 살생물처리가 된 건축자재, 재료나 장비, 박제물, 선박 등의 제품이라도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기능을 주장(표시·광고 등)하는 경우,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벌 시작
- ▶ ('32.7.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 단, 부칙 개정('25.12.31.)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이 1년 추가 연장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3) 살생물처리제품

2027년

- ▶ ('27.12.3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에 적용되던 경과조치 기한 종료
- * 다만, 공산품 등 일반적인 제품에 살생물처리를 할 때에는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를 사용할 일이 없으며, 대부분 보존제로 처리함



2028년

- ▶ ('28.1.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 하는 의무 시작
- ▶ ('28.7.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 ▶ ('28.12.3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에 적용되던 경과조치 기한 종료



2029년

- ▶ ('29.1.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 하는 의무 시작
- ▶ ('29.7.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2031년	▶ ('31.12.3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에 적용되던 경과조치 기한 종료
2032년	▶ ('32.1.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 하는 의무 시작 ▶ ('32.7.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2033년	▶ ('33.12.3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에 적용되던 경과조치 기한 종료
2034년	▶ ('34.1.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 하는 의무 시작 ▶ ('34.7.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 단, 부칙 개정('25.12.31.)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승인유효기간이 1년 연장된 경우, 해당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적용 또한 함께 연장된 것으로 판단해야 함

3.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적합 여부 확인 방법

현재까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 또는 승인된 제품은 화학제품안전포털(초록누리, <https://ecolife.mcee.go.kr/ecolife/main>)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1. 신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초록누리 첫 화면 중앙에 위치한 생활화학제품을 선택하면 현재까지 신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Ecolife portal homepag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시스템소개', '화학제품정보', '살생물제안전사용', '자율안전관리', '정보마당', and '홍보마당'.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banner on the right for '목재용 보존제 등 II그룹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안내'. On the left, there's a search bar and a grid of product categories. At the bottom, four blue boxes highlight different product types: '위반제품', '생활화학제품' (highlighted with a red border), '전성분 공개제품', and '살생물제'.

이때 찾고자 하는 제품의 신고번호, 제품명, 기업명 등에 따라 검색하여 해당 제품을 찾을 수 있으며, 목록에 제시된 제품을 선택할 경우 제품의 신고정보, 제품정보, 물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신고)

☞ > 화학제품정보 > 생활화학제품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신고)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하는 제품입니다. 이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前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종류 확인

전체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

상세조건검색

전체 553,092

10개씩

전체

신고번호

제품명

기업명

최신등록순

제품명순

제품분류순

제품제형순

업체명순

번호	제품명	전성품공개여부	제품분류	제형	업체명	신고번호	유효기간만료일	제품상태
553092	150에이 더블유1500에이 (150A W1500A)		인쇄용 잉크·토너	비분사형 > 카트리지형	주식회사 온스하이브	CB25-18-0023	2028-10-20	유효
553091	1733405		인쇄용 잉크·토너	비분사형 > 카트리지형	한국엠슨(주)	HB25-18-0061	2028-09-15	유효
553090	1891568		인쇄용 잉크·토너	비분사형 > 카트리지형	한국엠슨(주)	HB25-18-0059	2028-09-24	유효
553089	190104178		인쇄용 잉크·토너	비분사형 > 카트리지형	한국엠슨(주)	HB25-18-0069	2028-09-15	유효
553088	206에이 더블유2110에이 세트 (206A W2110A SET)		인쇄용 잉크·토너	비분사형 > 카트리지형	주식회사 온스하이브	CB25-18-0024	2028-10-20	유효
553087	206엑스 더블유2111엑스 (206X W2111X)		인쇄용 잉크·토너	비분사형 > 카트리지형	주식회사 온스하이브	CB25-18-0024	2028-10-20	유효
553086	206엑스 더블유2113엑스 (206X W2113X)		인쇄용 잉크·토너	비분사형 > 카트리지형	주식회사 온스하이브	CB25-18-0022	2028-10-20	유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신고)

☞ > 화학제품정보 > 생활화학제품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신고)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하는 제품입니다. 이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前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정보

신고번호	CA21-10-1124
시험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제품구분(대표/파생)	파생변경
신고종명서 발급일	2025-12-08
성적발급구분	중명서 발급완료
검사기준	환경부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험성적서 만료일	2027-06-14
구분(제조/수입)	제조
업체	원진포리머

제품정보

물질정보

변경이력정보

◦ 제품정보

제품명	디용도 순간접착제
분류	접착·접합제품
품목·용도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 순간·강력용 (고무용)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 순간·강력용 (금속용)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 순간·강력용 (목재용)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 순간·강력용 (플라스틱용)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대상
제품재형	액체형
유통기한	해당없음
중량·용량·매수·크기	13 g
어느점	해당없음
역성	해당없음
표준사용량	해당없음
판매자, 주소, 연락처	(주)오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광박위로 341, 0328215074
제조사, 주소, 연락처	원진포리머, (21629)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64 (남촌동), 5B 5L, 032-819-7511
사용방법	1. 접착면의 기름, 수분, 먼지 등 이물질들 깨끗이 청소하고 건조시키십시오. 2. 뚜껑을 누른 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여십시오. 3. 접착제를 얇게 도포 후 30초 이내에 접착하십시오. (도포량, 접착면의 재질에 따라 접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제품의 내용물을 분무기 등에 담아 분사하지 마십시오. -용기와 결합된 뚜껑을 억지로 벗기지 마십시오. -피부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피부에 묻었을 경우 무리하게 떼어내지 말고 전용 리무버를 이용하거나 따뜻한 물에 천천히 떼어내십시오.) -면 소재 접촉시 발열로 인한 화상위험이 있습니다.(면장갑 사용금지) -접착 이외의 용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목적에 적합한지 사전 테스트 후 사용하십시오. -사용 후에는 마개를 꼭 닫아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십시오. -장기 보관시 변질 될 수 있습니다. -습도가 낮을 경우 접착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정보를 통해 제품에 사용된 개별 물질을 선택하면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및 예방조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표시도안보기를 선택하면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부착하여야 하는 표시도안을 표시면적의 크기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2. 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한 초록누리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첫 화면의 상단에 위치한 “화학제품정보” 메뉴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을 선택하면 승인된 제품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초록누리' (Green Nuri) website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 '시스템소개', '화학제품정보' (highlighted with a red box), '살생물제안전사용', '자율안전관리', '정보마당', and '홍보마당'. The '화학제품정보' menu is expanded, showing options like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highlighted with a red box), '살생물제', '위반제품', '해외직구 위해제품', and '화학제품 안전정보'. Below the menu, there are four promotional cards: '위반제품' (Violating Products), '생활화학제품' (Consumer Chemical Products), '전성분 공개제품' (Full Ingredient Disclosure Products), and '살생물제' (Pesticides).

승인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경우에도 찾고자 하는 제품의 승인번호, 품목, 제품명, 업체명 등에 따라 검색하여 해당 제품을 찾을 수 있으며, 목록에 제시된 제품을 선택할 경우 제품의 승인정보, 제품정보, 물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승인)

☞ > 화학제품정보 > 생활화학제품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승인)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하기 전 승인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살생물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기간 동안에만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될 예정이므로, 경과조치 적용기간 내에 살생물제품 승인을 획득하여야 계속하여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승인정보

승인번호	2725-0001
승인일자	2025-01-06
구분(제조/수입)	제조
업체명	동아침메드 주식회사

제품정보

물질정보

◦ 제품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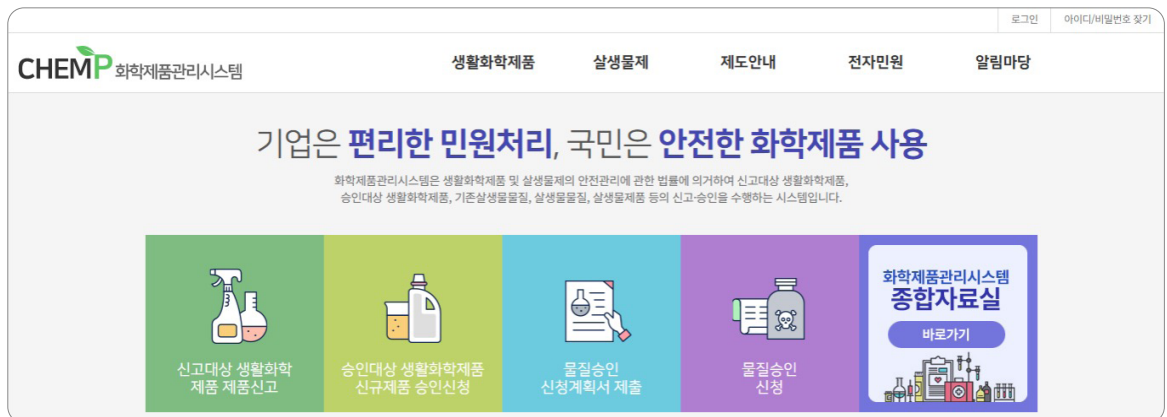
제품명	동아침메드 이디와임스에이치피(과산화수소수(50%))
품목	7.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제품제형	백색의 부직포에 침적된 투명한 무색의 액제
저장방법 및 유통기한	기밀용기, 실온(1~30℃) 보관, 제조일로부터 36개월
중량·용량·매수	20매, 50매, 100매/팩
용법·용량	정보보기
사용상의 주의사항	정보보기

3.3 적법한 살생물물질 확인 방법

살생물처리시에 사용하는 살생물제품과 살생물물질은 승인되었거나 승인유예 중인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3.1. 승인된 물질 또는 제품의 확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이 승인되면 「화학제품안전법」 제29조에 따라 승인된 살생물물질과 제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https://chempold.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화학제품안전포털(초록누리) 구축 완료시 <https://ecolife.mcee.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HEMP 사이트에 링크한 후 첫 화면 상단의 ① **살생물제** 메뉴로 가서, ② **살생물물질**에서 8번째 메뉴인 ③ **승인 살생물물질 정보 공개**를 누르십시오.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제도안내	전자민원	알림마당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규제품 승인신청 변경승인/변경신고 취하신청	기존살생물물질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살생물물질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살생물물질 인정신청 허위물질 시정자료 부통의 확인 신청 산업폐암신청 살생물물질 변경승인 살생물물질 변경신고 승인 살생물물질 정보공개 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살생물제품과 승인신청 제품승인 특례신청 제품유사성 인정신청 허위물질 시정자료 부통의 확인 신청 산업폐암신청 승인 살생물제품 정보공개 산업폐지원 대외사업분석 유해성시험자료 교육·실무가이드 지원사업		권라·의무 승계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조수입장보고 제조수입장보고 및물 등록 수출입 업무 수입 요건확인번호 신청 수입요건 면제신청 자유판매증명	종합자료실 공지사항 FAQ 자료실 시스템소개 수수료안내 법령정보	

그러면, 현재 승인된 살생물물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살생물물질 정보공개

HOME · 살생물제 · 살생물물질 · 승인 살생물물질 정보공개

· 계통유형 · 전체 · 검색어 · 전체= · Q 조회

· 후계시효 72건 (1/8) · 10건의 보기

순번	정보공개번호	고유번호(CAS No.)	살생물물질 명칭	사용가능한 살생물제용 유효성 및 기능	살생물물질 용도	승인유효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승인정보
1	2022-01	51-03-6	Piperonyl Butoxide	살충제 (PT-05) · 살충제	전문사용자·다용이용자(실내외), 산업시설(실내외), 주거시설(실내외), 일반사용자·다용이용자(실내외), 주거시설(실내외)	10년(2032.12.29.까지)	상세보기
2	2022-02	59-50-7	Chlorocresol	살균제 (PT-01) · 살균제, 살진균제	일반사용자·다용이용자(실내외)	10년(2032.12.29.까지)	상세보기
3	2022-03	64-17-5	Ethanol	살균제 (PT-01) · 살균제, 살진균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실내외), 다용이용자(실내외), 일반사용자·다용이용자(실내외), 주거시설(실내외)	10년(2032.12.29.까지)	상세보기
4	2022-04	67-63-0	Isopropyl alcohol	살균제 (PT-01) · 살균제, 살진균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실내외), 일반사용자·다용이용자(실내외), 주거시설(실내외)	10년(2032.12.29.까지)	상세보기
5	2022-05	71-23-8	Propan-1-ol	살균제 (PT-01) · 살균제	일반사용자·다용이용자(실내외), 주거시설(실내외)	10년(2032.12.29.까지)	상세보기
6	2022-06	77-92-9	Citric acid	살균제 (PT-01) · 살균제	전문사용자·다용이용자(실내외), 일반사용자·다용이용자(실내외), 주거시설(실내외)	10년(2032.12.29.까지)	상세보기
7	2022-07	79-21-0	Peracetic acid	살균제 (PT-01) · 살균제, 살진균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실내외), 일반사용자·다용이용자(실내외), 주거시설(실내외)	10년(2032.12.29.까지)	상세보기
8	2022-08-1	87-90-1	Active chlorine released from symclosene	살균제 (PT-01) · 살균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실내외), 일반사용자·다용이용자(실내외), 주거시설(실내외)	10년(2032.12.29.까지)	상세보기
9	2022-08-2	87-90-1	Active chlorine released from symclosene	살균제 (PT-02) · 살균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실내외), 일반사용자·다용이용자(실내외)	10년(2032.12.29.까지)	상세보기
10	2022-09	89-83-8	Thymol; 2-isopropyl-5-methylphenol	살균제 (PT-01) · 살균제	일반사용자·주거시설(실내외)	10년(2032.12.29.까지)	상세보기

살생물제품은 ① 살생물제 메뉴로 가서, ② 살생물제품에서 8번째 메뉴인 ③ 승인 살생물제품 정보 공개를 누르면 현재 승인된 살생물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살생물제품 정보공개

HOME · 살생물제 · 살생물제품 · 승인 살생물제품 정보공개

· 계통유형 · 전체 · 검색어 · 전체= · Q 조회

· 후계시효 81건 (1/6) · 10건의 보기

순번	정보공개번호	살생물제품 명칭	살생물물질 명칭(CAS No., 함량)	사용가능한 살생물제용 유효성 및 기능	사용자 범주	승인 유효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승인정보
1	2025-01	베스핀트르	클로로핀(Clofenol (CAS No. 120-32-1, 13.1%w/w) 2-적닐라올(Bisphenyl-2-ol (CAS No. 90-43-7, 6.1%w/w))	살균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농가·산업시설·실내)	10년(2035.12.30.까지)	상세보기
2	2025-02	엘리제아치트르	클로로핀(Clofenol (CAS No. 120-32-1, 13%w/w) 2-적닐라올(Bisphenyl-2-ol (CAS No. 90-43-7, 6%w/w))	살균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농가·산업시설·실내)	10년(2035.12.30.까지)	상세보기
3	2025-03	왕울루엔엘리제아치트르	클로로핀(Clofenol (CAS No. 120-32-1, 13.1%w/w) 2-적닐라올(Bisphenyl-2-ol (CAS No. 90-43-7, 6.1%w/w))	살균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농가·산업시설·실내)	10년(2035.12.30.까지)	상세보기
4	2025-04	왕울루엔엘리제아치트르	클로로핀(Clofenol (CAS No. 120-32-1, 13%w/w) 2-적닐라올(Bisphenyl-2-ol (CAS No. 90-43-7, 6%w/w))	살균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농가·산업시설·실내)	10년(2035.12.30.까지)	상세보기
5	2025-05	엑셀투크 보호 엘스 다발트 (ECPProtect C)	이염화비스(아노라이트 나트륨) 이산화물 유래 활성염소/Active chlorine released from sodium dichloroisocyanurate dihydrate (CAS No. 51580-86-0), 80.77% w/w (as Active chlorine 43.8% w/w)	살균제	전문사용자(전문가)·산업시설·실내	10년(2035.12.30.까지)	상세보기
6	2025-06	엑셀투크아미노 보호 우발	프탈레트린(Phthalothrin (CAS No. 23031-36-9), 0.100% w/w 디노트린(Di-Phenothrin (CAS No. 26002-80-2), 0.125% w/w	살충제	일반사용자·주거시설·다용이용자(실내·실외)	10년(2034.12.30.까지)	상세보기
7	2025-07	세틱스알루300리퀴드	브로마디올론(Bromadiolone (CAS No. 28772-56-7), 0.021% w/w	살서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실내·실외	3년(2027.12.30.까지)	상세보기
8	2025-08	세틱스알루310리퀴드	브로마디올론(Bromadiolone (CAS No. 28772-56-7), 0.025% w/w	살서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실내·실외	3년(2027.12.30.까지)	상세보기
9	2025-09	세틱스알루320리퀴드	브로마디올론(Bromadiolone (CAS No. 28772-56-7), 0.039% w/w	살서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실내·실외	3년(2027.12.30.까지)	상세보기
10	2025-10	세틱스알루300리퀴드	브로마디올론(Bromadiolone (CAS No. 28772-56-7), 0.005% w/w	살서제	전문사용자·농가·농가·산업시설·실내·실외	3년(2027.12.30.까지)	상세보기

3.3.2. 승인유예된 기존살생물물질 확인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에 따라 보존제를 포함한 많은 기존살생물물질의 유예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유예기간 중인 기존살생물물질의 목록은 화학물 질안전원고시로, 누리집(<https://nics.mcee.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사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old.keiti.re.kr>) 공지사항 중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및 「승인유예대상 신고기업 목록 알림」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3.3.2.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고시 내용 확인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첫 화면 상단을 보면 다음의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림마당의 법령정보 중 안전원 고시/예규/공고 메뉴를 누르십시오.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Korea Chemical Safety Council.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정보공개', '국민마당', '알림마당' (highlighted), '자료마당', '업무안내', '기관소개', and '개원10주년'. The '알림마당' section is expanded, showing various categories. The '법령 정보' (Legal Information) category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within it, '안전원 고시/예규/공고' (Safety Council Orders/Regulations/Notices) is also highlighted with a red box.

다양한 고시 목록이 공개되어 있어, 검색어로 검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검색어를 살생물물질로 하면, 다음과 같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최근 개정된 고시입니다. 여기에서 파일(클립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고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안전원 고시/예규/공고' (Safety Council Orders/Regulations/Notices) page. The search bar at the top right shows '살생물물질' (Pesticides). The table below lists various notices. The first notice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공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8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곽승원	2025-12-05	100
공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9호》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곽승원	2025-12-05	192
공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6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정만선	2025-09-26	397
공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3호》 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곽승원	2025-08-07	790
공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7호》 유해화학물질 사각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박한욱	2025-08-07	372
공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8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김인자	2025-08-07	337
공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	곽승원	2025-08-07	609
6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4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김만국	2025-02-03	264
5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60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장석원	2024-07-12	227

[별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제2조 관련)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1	2-(Acetyloxy)benzoic acid; O-Acetylsalicylic acid	50-78-2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7.12.31. 2027.12.31. 2029.12.31.
2	2-(2-Butoxyethoxy)ethyl 6-propylpiperonyl ether; Piperonyl butoxide; PBO	51-03-6	2-다. 살충제	2023.12.31.
3	Bronopol	52-51-7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3-라. 목재용 보존제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 4-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2027.12.31. 2027.12.31. 2027.12.31. 2024.12.31. 2029.12.31. 2029.12.31. 2029.12.31.
4	2-Hydroxybenzoic acid monosodium salt; Sodium salicylate	54-21-7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5	Propane-1,2-diol; Propylene glycol	57-55-6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6	Chlorocresol	59-50-7	1-가. 살균제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	2023.12.31. 2027.12.31. 2027.12.31. 2027.12.31. 2029.12.31. 2029.12.31.
7	Tetrasodium ethylenediaminetetraacetate; Tetrasodium EDTA	64-02-8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8	Ethanol	64-17-5	1-가. 살균제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3.12.31. 2027.12.31. 2027.12.31.
9	Formic acid	64-18-6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	2027.12.31. 2027.12.31. 2029.12.31.
10	Benzoic acid	65-85-0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2027.12.31. 2027.12.31.

아울러 검색어를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로 하면, 다음과 같이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수입이 가능한 살생물물질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마당

공지·공고

보도

기관홍보

연구활동

법령 정보

안전원 고시/예규/공고

환경부 고시/예규/운영

우수성과

안전원 고시/예규/공고

총 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제목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공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8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곽솔원	2025-12-05	100
공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9호)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곽솔원	2025-12-05	192
공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6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정민선	2025-09-26	398
공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3호) 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곽솔원	2025-08-07	790
공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박한욱	2025-08-07	372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1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김영희	2024-05-02	82

[별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제2조 관련)

순번	살생물물질명	CAS 번호
1	젖산(Lactic acid, C ₃ H ₅ O ₃)	50-21-5
2	아세트산 나트륨(Sodium acetate, C ₂ H ₃ NaO ₂)	127-09-3
3	벤조산 나트륨(Sodium benzoate, C ₇ H ₅ NaO ₂)	532-32-1
4	(+)-타르타르산((+)-Tartaric acid, C ₄ H ₆ O ₆)	87-69-4
5	아세트산(Acetic acid, C ₂ H ₄ O ₂)	64-19-7
6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C ₃ H ₆ O ₂)	79-09-4
7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C ₆ H ₈ O ₆)	50-81-7
8	린시드 오일 또는 아마씨유(Linseed oil)	8001-26-1
9	라벤더 오일(Lavender oil)	8000-28-0
10	페퍼민트 오일(Peppermint oil)	8006-90-4
11	1-옥텐-3-올(1-Octen-3-ol 또는 Oct-1-en-3-ol, C ₈ H ₁₆ O)	3391-86-4
12	옷좀나방 페로몬(Webbing clothes moths pheromone)	
13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 ₂)	124-38-9
14	질소(Nitrogen, N ₂)	7727-37-9
15	(Z,E)-테트라데카-9,12-다이에닐 ((Z,E)-Tetradeca-9,12-dienyl acetate, C ₁₆ H ₂₈ O ₂)	아세테이트 30507-70-1 31654-77-0
16	바큘로바이러스(Baculovirus)	
17	벤토나이트(Bentonite)	1302-78-9
18	시트로넬랄(Citronellal, C ₁₀ H ₁₈ O)	106-23-0
19	황산 철(II)(Iron(II) sulphate)	7720-78-7 7782-63-0 13463-43-9
20	글리세롤(Glycerol)	56-81-5
21	탄산수소 나트륨(Sodium hydrogen carbonate)	144-55-8
22	탄산 칼슘(Calcium carbonate)	471-34-1
23	염화 나트륨(Sodium chloride)	7647-14-5

3.3.2.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사 확인

화학제품 관리시스템(CHEMP, <https://chempold.keiti.re.kr/>) 첫 화면에서 상단의 알림마당 메뉴의 공지사항을 누르십시오.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생화학제품
살생물제
제도안내
전자민원
알림마당

기업은 편리한 민원처리, 국민은 안전한 화학제품 사용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은 생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고대상 생화학제품, 승인대상 생화학제품, 기존살생물물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등의 신고·승인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신고대상 생화학제품 제품신고

승인대상 생화학제품 신규제품 승인신청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물질승인 신청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종합자료실

바로가기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제도안내	전자민원	알림마당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규제품 승인신청 변경승인/변경신고 취하신청	기존살생물물질 물질승인 신청계좌서 제출 살생물물질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불질등용성 인정신청 작중승용 시험자료 복종의 확인 신청 신임제안신청 살생물물질 변경승인 살생물물질 변경신고 승인 살생물물질 정보공개 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살생물제품군 승인신청 제품승인 특례신청 제품위사성 인정신청 작중승용 시험자료 복종의 확인 신청 신임제안신청 승인 살생물제품 정보공개 산업계지원 데이터접분식 유해성시험자료 교육 · 실무가이드 지원사업		권라·의무 승계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조수입량보고 제조수입량보고 알람 등록 수출입 업무 수입 요건확인번호 신청 수입요건 면제신청 자유판매증명	종합자료실 공지사항 FAQ 자료실 시스템소개 우수료인내 법령정보

그리고,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 살생물제 메뉴 중 살생물제 메뉴를 클릭한 후 공지사항 중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및 승인유예대상 신고기업 목록 알림」 파일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제도안내
전자민원
알림마당

공지사항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
살생물제

· 총 게시물 298건 (1/30)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공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관련 문서제출 안내	2025-09-30	-
공지	「안생품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대비 산업계 설명회」 개최 안내	2025-09-23	-
공지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취급 사업장 관련 법령 교육과 지원사업 안내, 제도 이행...	2025-07-18	-
공지	살생물제 승인이행 시스템 실무 교육 참석 안내	2025-07-02	-
공지	[안내] 살생물제 승인이행 계고 산업계 교육 참석 안내	2025-07-02	-
공지	[공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고시 및 승인유예 대상 ...	2022-01-21	-

그러면 첨부파일 목록의 붙임 2.에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일한 CAS NO.의 살생물물질이라도 승인받은 제조·수입사만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살생물제품 업체는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승인받은 제조·수입사의 물질이어야 함)을 공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공지사항 - 글조회

제목	[공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및 승인유예대상 신고기업 목록 알림		
작성시간	2022-01-21	조회수	16801
글내용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붙임1(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92호)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지정 고시 제2조제2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관련 신고기업 목록」을 붙임2와 같이 공지합니다. 3. 「22년 승인 살생물물질에 대한 정보」는 [공지] 「22년 승인 살생물물질 정보 및 주의사항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살생물물질 승인관련 제도 이행사항 추가안내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 이후 상시신고된 건의 경우 신고기업 목록에 업데이트된 날짜를 지정·고시된 날짜로 적용하여 제출기한을 설정하오니 제출기한 내 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공지사항 및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1800-4840, 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공지]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시스템 오픈 및 시스템 이용자 가이드 배포 안내 (2020. 07. 08.) - [공지] 살생물물질승인 신청 시스템 오픈 안내 및 사용자 매뉴얼 (2021. 06. 25.) ※ 참고자료: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작성제출 실무가이드 (2020. 07. 08.) 2.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승인유예를 받은 기업은 물질승인 공동제출 협의체(동일 물질에 대하여 2개 이상 기업으로 구성)에 가입해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다음의 공지사항 및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단(02-6050-1314~15)으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	붙임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제2조 관련)(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hwp [94706 byte] 붙임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추가지정)관련 신고기업 목록(예표용, 24.08.15.기준) .xlsx [338135 byte]		

A	B	C	D	E	F	G	H	I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식용될 수 있는 살생용제표유형	승인유예기간	접수번호	제1/수입	구분	신고기업
1	1 2-(Acetyloxy)benzoic acid: O-Acetylsalicylic acid	50-78-2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1211-0373	제조	살생용 물질	(주)에코조인
2	1 2-(Acetyloxy)benzoic acid: O-Acetylsalicylic acid	50-78-2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1211-0429	수입	살생용 물질	(주)에코조인
3	1 2-(Acetyloxy)benzoic acid: O-Acetylsalicylic acid	50-78-2	3-나. 제용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191211-0373	제조	살생용 물질	(주)에코조인
4	1 2-(Acetyloxy)benzoic acid: O-Acetylsalicylic acid	50-78-2	3-나. 제용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191211-0429	수입	살생용 물질	(주)에코조인
5	1 2-(Acetyloxy)benzoic acid: O-Acetylsalicylic acid	50-78-2	3-다.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8.12.31.	191211-0373	제조	살생용 물질	(주)에코조인
6	1 2-(Acetyloxy)benzoic acid: O-Acetylsalicylic acid	50-78-2	3-다.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8.12.31.	191211-0429	수입	살생용 물질	(주)에코조인
7	1 2-(Acetyloxy)benzoic acid: O-Acetylsalicylic acid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515-0042	수입	살생용 제품	오토솔코리아
8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605-0007	수입	살생용 물질	주식회사 씨디아이
9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605-0026	수입	살생용 처리제	헵스터
10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607-0061	수입	살생용 처리제	주식회사 유엔솔
11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607-0200	수입	살생용 처리제	(주)일렉스
12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624-0069	수입	살생용 제품	뉴트리언앤드비오케어인스크리아 유한회사
13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624-0146	제조	살생용 제품	아성정밀화학(주)
14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624-0181	수입	살생용 처리제	한국비스프(주)
15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624-0228	수입	살생용 물질	아성정밀화학(주)
16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624-0574	수입	살생용 제품	한스스카리아유한회사
17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628-0392	수입	살생용 처리제	씨카코리아(주)
18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628-0471	수입	살생용 처리제	유니조제(주)
19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628-0554	수입	살생용 처리제	(주)에코조인
20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629-0289	수입	살생용 제품	한국제미화학(주)
21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629-0385	수입	살생용 물질	동영화학공업상사
22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629-0448	수입	살생용 처리제	에르메스코리아(유)
23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629-0882	수입	살생용 처리제	한국스미덱스오아시스(주)
24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629-0931	수입	살생용 처리제	스피드팩코리아 주식회사
25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701-0056	수입	살생용 제품	(주)에이비
26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701-0109	수입	살생용 처리제	(주)에이비
27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701-0136	수입	살생용 처리제	(주)에이비
28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701-0139	수입	살생용 물질	(주)계성인디스트리
29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701-0436	수입	살생용 물질	조광제약(주)
30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701-0484	수입	살생용 처리제	에코볼
31	3 Bronopol	52-51-7	3-가. 제용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90701-0683	수입	살생용 처리제	주식회사 미나글로벌

살생물제의 구분 및 그에 따른 의무

4.1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분 방법

4.1.1. 살생물제품

앞서 설명드린 3.3.3.에 따라 유해생물의 제거 등 제품의 살생물 기능이 주된 목적에 해당하여 살생물제품인 경우는 ①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을 하거나, ②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을 하는 경우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의 판단 기준은 **가.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거나, **나. 특정 유해 생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다. 항균 등** 모호한 표현으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암묵적** 주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구분	설명	사례
가. 질병예방	사용자나 다른 사람들의 질병 예방 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로, 특정 질병에 대한 효과를 주장하거나 통칭하여 '질병 예방'을 주장	탈취 및 바이러스 억제로 질병 예방(에어컨 필터)
나. 특정 유해한 생물 제거	사용자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지만,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특정 생물의 종류를 명시하거나 해당 생물을 제거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제품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해세균을 제거하여 실내 공기를 안전하게(에어컨 필터)
다. 암묵적 주장	제품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항균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암묵적으로 대중의 건강을 보호 주장을 하는 경우	항균 먼지봉투(청소기 먼지봉투), 항균 곰팡이 방지 수지(전기밥솥)

②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인 경우

구분	설명
주기능 가	제품에서 살생물 기능이 없으면 제품의 가치가 현격히 저하되는 경우(살균, 소독, 살충, 방충 등을 주장하는 경우 포함)
주기능 나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유일한 기능인 경우
주기능 다	제품의 명칭 또는 명칭의 위치 에 항균이나 방충 등을 뜻하는 유사 용어 (제균,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항진드기 등)를 사용하는 경우
주기능 라	살생물 기능을 주장하면서 99.9% 제거 등 구체적인 효능 을 주장하는 경우
주기능 마	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 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

4.1.2.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 기능에 관한 주장 여부와 상관없이 살생물처리를 하였으면, 살생물처리제품이 됩니다. 만약 살생물처리제품이 가진 살생물 효과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싶다면, 대중의 건강보호 등 **살생물제품이 되는 주장은 하지 않아야 하고** 단지, 제품보호를 위하여 살생물처리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며,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1.3.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분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은 아래의 순서도에 따라 구분하면 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제품의 차이는 다음과 같으며, 제품 구분에 따라 4.2.에 설명된 바와 같이 법적 의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 살생물처리제품(1) : 살생물처리는 하였으나 어떠한 **효과 주장도 없는 제품**(가전제품의 부품에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처리가 되어 있지만, 항균처리에 대한 어떤 광고나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 살생물처리제품(2) : 살생물처리를 하였고, 그 **효과를 주장하는 제품**("항균처리를 하여 가전제품 표면에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며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돕습니다" 등과 같은 광고·주장이 있는 경우)



4.2 살생물제품의 법적 의무

- ◆ 살생물제품은 제품유형에 적합하게 승인받은 살생물물질만을 사용하여 **법 부칙제3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경과조치기간** 이내에 제품승인을 받아야 함
- ◆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4.2.1. 살생물제품 판매 이전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품 시장 출시전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살생물제품의 **유형별 승인유예기간내 제품 승인**(법 제20조제1항)
- 살생물제품의 사용시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포장 등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준수**(법 제20조제2항)
- 구매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정해진 표시사항을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법 제27조)
- 살생물제품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표시·광고에 사용하면 안되고**,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위해 방지를 위한 문구는 **명확하고 알기 쉽게 광고에 포함**(법 제34조제1항)

4.2.2. 살생물제품 판매 이후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고 제품 겉면 또는 포장 등에 제품 정보 등을 적합하게 표시하여 판매하는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살생물제품의 **새로운 유·위해성, 효능 등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법 제36조)
-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수량, 함유 살생물물질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을 **기록(전자문서 포함)하고 10년간 보관**(법 제49조제1항)
-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함유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함량을 **2년마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보고**(법 제49조제2항)

4.3

살생물처리제품 유형에 따른 법적 의무

- ◆ 살생물처리제품의 법적 의무는 법 부칙제4조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의 경과조치기간이 지나면 바로 적용되므로 미리 준비 필요
- ◆ 한편,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주장(항균 등)을 하면 법 부칙제3조의 경과조치가 적용 → '25년 12월전에 부적절한 표시·광고 개선 필요

4.3.1. 공통 의무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자와 수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하는 살생물제품은 화학물질안전원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승인된 용도 등 승인받은 범위에 맞게 사용(법 제28조)
- 처리제품 구매자 요청 시 사용된 살생물제품 정보 제공(법 제30조)
- 살생물제(물질, 제품, 처리제품)의 새로운 유·위해성, 효능 등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법 제36조)
- 기록 및 보존(법 제49조)

4.3.2. 표시 의무

살생물처리제품의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상기의 공통 의무이외에 추가적으로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정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은 승인 단계에서 처리제품에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경우는 효과나 효능을 주장하지 않는 살생물처리제품이라도 살생물물질·제품의 승인 단계에서 표시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법 제12조 및 제20조에 따른 보존제 등 살생물물질·제품 승인시 주의사항(알려지 유발물질, 에어로졸 제품에 대한 함량 제한 등) 등을 처리제품에 표시하는 조건으로 승인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제품정보에 대한 표시는 제품의 겉면에 합니다. 만약, 제품 겉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품 포장, 첨부문서, 라벨 또는 태그(꼬리표)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일부분이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제품의 최소단위 포장에 표시하거나 사용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의 경우 여러 가지 살생물처리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냉장고 손잡이가 항균처리된 부품인데 항균 기능을 주장하려는 경우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함. 이때, 냉장고 문에 표시하거나 사용설명서에 냉장고 손잡이에 대한 살생물처리제품 표시사항을 기재하면 됨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제2부 2.11.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해당사자별 안전관리 의무사항 및 이행 방법

5.1 가전제품 제조사

가전제품 제조사는 법에서 정한 살생물제품의 **경과조치기간을 확인하여 적법한 살생물제품**을 구매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며,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의 경과조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해당 부품의 표면 또는 완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법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단계	할 일	세부 내용
1	공급망 관리	- 가전제품 사용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부품 확인 - 부품 공급사 대상 살생물제 관리제도 교육 및 value chain 관리
2	가전제품사 자체 관리	-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부품 사용시 가전제품 겉면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살생물제 관련 표시사항 기재 - 법 제34조에 따른 가전제품 표시·광고 금지 문구 사용 여부 확인 및 적절한 표시·광고 사용
3	소비자 정보 전달	- 「화학제품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소비자 요청시 살생물처리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4	기록 보관	- 「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에 따라 처리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과 사용량을 기록 보관

5.1.1. 공급망 관리

우선은 가전제품 제조사와 살생물제인 부품 공급자 간에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내에 함유된 살생물제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품에 사용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이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쳤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내)** 승인된 살생물물질 또는 승인유예된 기존살생물물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 현행 및 기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안전원고시)를 확인하여 법 부칙제4조에 따른 적법 여부 확인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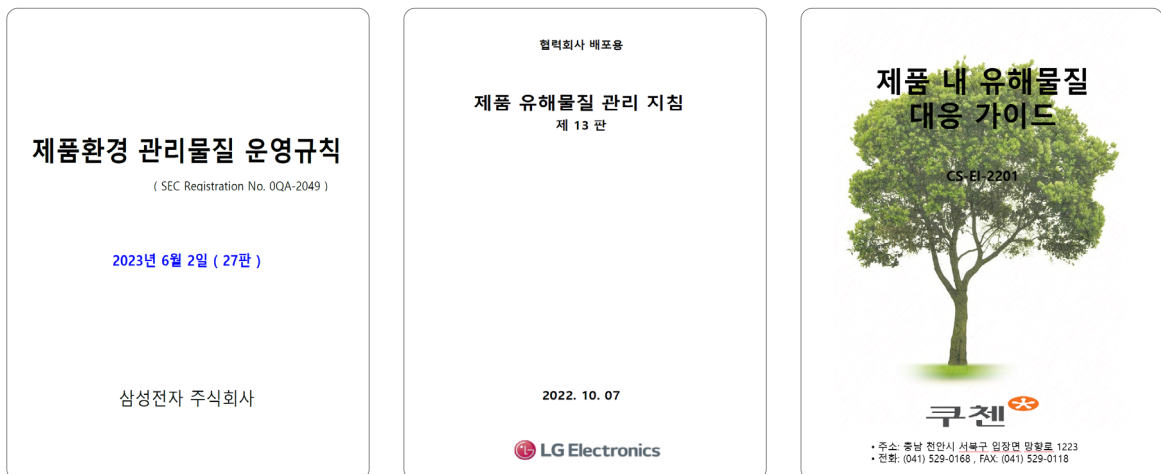
-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후)**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승인된 범위내에서 사용하였는지 확인

※ '26년부터 승인된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유통 의무가 시작되므로 규제 이행 일정 확인 필요

이때 적법한 살생물물질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부 3.3. 적법한 살생물물질 확인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확인
- 승인된 살생물물질 및 물질의 제조·수입사 정보: CHEMP 공개 정보 확인
- 승인된 살생물제품 및 제품의 제조·수입사 정보(승인 후 공개예정): CHEMP 공개 정보 확인

현재 다수의 가전제품 제조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제품내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지침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침서에 따라 제품 유형에 적절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공급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내 전산 기반 관리체계 같은 전산망 등을 구축하여 공급망을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주기적인 공급망 대상 교육 및 세미나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전사별 자체 제품내 화학물질 관리지침 사례〉

만약, 해당 부품 공급사가 처리제품 제조·수입사임에도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가전제품 제조사는 처리제품의 소비자로서 부품 공급사에 「화학제품안전법」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에 따른 정보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5.1.2. 가전제품사 자체 관리

① 표시기준 준수

가전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중에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있을 경우 가전제품 제조사는 복합제품인 가전제품에 대하여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표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품이 살생물제품인 가전제품의 표시〉

- 가전제품 제조사가 냉장고 내부의 벽면 등을 살균하기 위하여 이온발생기 등과 같은 살생물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이온발생기에 대한 표시사항을 냉장고 겉면이나 사용설명서 등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본 가이드라인 '제2부 2.9. 살생물제품의 표시' 및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확인 가능

〈부품이 살생물처리제품인 가전제품의 표시〉

-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경우)** 가전제품 제조사가 냉장고 손잡이에 항균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가전제품 판매 시에 **광고할 계획**이 있다면, **법에서 정한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가전제품 제조사는 냉장고 손잡이에 항균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광고할 계획이 없지만, 손잡이 부품 **공급자가 이미 시장에서 살생물 효과와 효능을 광고하거나 주장하고 있다면** 법에서 정한 표시를 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손잡이 부품 공급자가 시장에 출시되는 손잡이에 대해 항균처리된 효과를 주장한다면, 손잡이나 냉장고 사용설명서 등에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함

-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냉장고 손잡이에 항균처리가 되어 있지만 손잡이 공급자나 냉장고 제조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광고나 주장을 통해 알릴 계획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전제품내 부품이 살생물제품이나 살생물처리제품이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수단은 가전제품 사용설명서가 적절할 것입니다. 가전제품 사용설명서에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된 부품의 목록을 제시하고, 부품별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기준에 맞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적절한 광고

가전제품은 살생물처리제품에 부합하는 표시 및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살생물처리제품에는 대중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하며,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이 될 수 있는 표현이나 표현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기업에서는 가전제품의 항균처리로 인한 효과를 표시·광고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항균처리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전제품 자체 이외의 대상(제품 사용자 등)에 대한 유해생물 제거 기능이 아닌 제품 자체의 부패 방지나 제품 자체에 대한 세균과 곰팡이의 성장 억제를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항균처리를 통해 제품 자체를 위생적으로 사용 또는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은 가능하지만 항균처리된 제품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나 사용자의 위생이 증진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전제품을 다른 판매자가 판매할 때 가전제품 제조사가 사용한 표시와 광고만 사용하도록 계약 또는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판매 유통사의 잘못된 표시 광고로 인해 가전제품 제조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5.1.3. 고객을 위한 소비자 정보 전달

「화학제품안전법」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 제공 등)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는 제품의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살생물처리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청(「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소비자가 가전제품 제조사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가전제품 제조사에서는 해당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살생물처리제품의 제조자나 수입자는 45일 이내에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5.1.4. 관리기록 보관

「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에 따라 처리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과 사용량 기록 등을 보관하여, 가전제품 제조사가 「화학제품안전법」 이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것을 언제든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전제품 제조사가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시와 광고를 이행하였으나 다른 판매자가 가전제품 제조사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잘못된 광고를 사용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관리기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5.2 가전제품 부품 공급사

가전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 공급사는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살생물물질을 구매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며, 공급하는 부품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5.2.1. 1차 부품 공급사

최종 가전제품사에 공급하는 부품에 대하여 하위 공급망(2차~n차)에서 **공급하는 부품(원자재)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사용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이 해당 제품유형에 적합하게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승인통지서 등 승인정보를 하위 공급망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위 공급망으로부터 제공받은 부품 및 부품에 사용된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통지서 등 승인정보는 가전제품 제조사에 부품 공급시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전제품의 부품에 1차 부품 공급사가 직접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가전제품의 부품으로 가전제품 제조사에 공급한다면 1차 공급사에서 해당 부품에 대해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고 이에 대한 정보를 가전제품 제조사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5.2.2. n차 부품 공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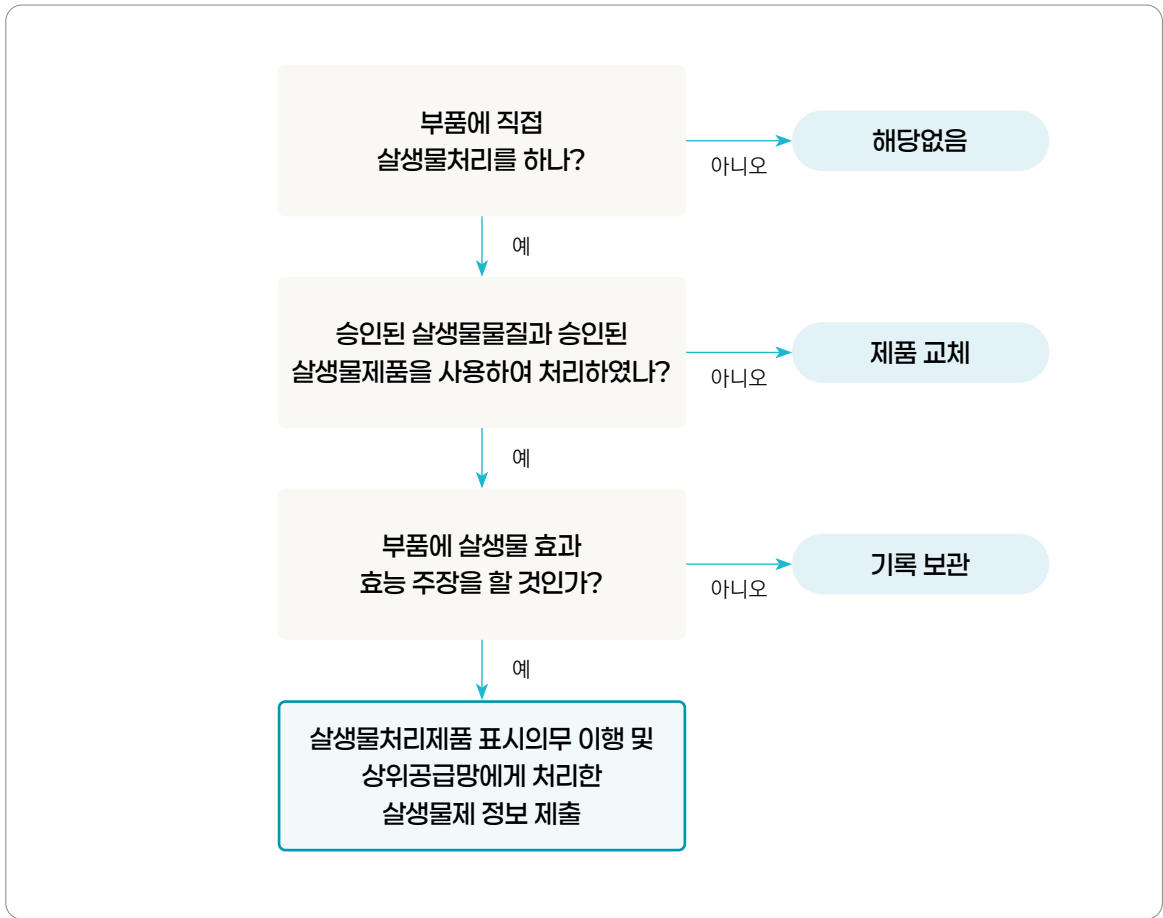
① 살생물제품 부품 공급사

상위 공급망에 **판매하는 부품이 살생물제품**이라면, 해당 부품은 사전에 독성시험, 위해성평가 등 면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제1항 등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에 살생물제품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승인통지서를 상위 공급망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살생물처리제품 부품 공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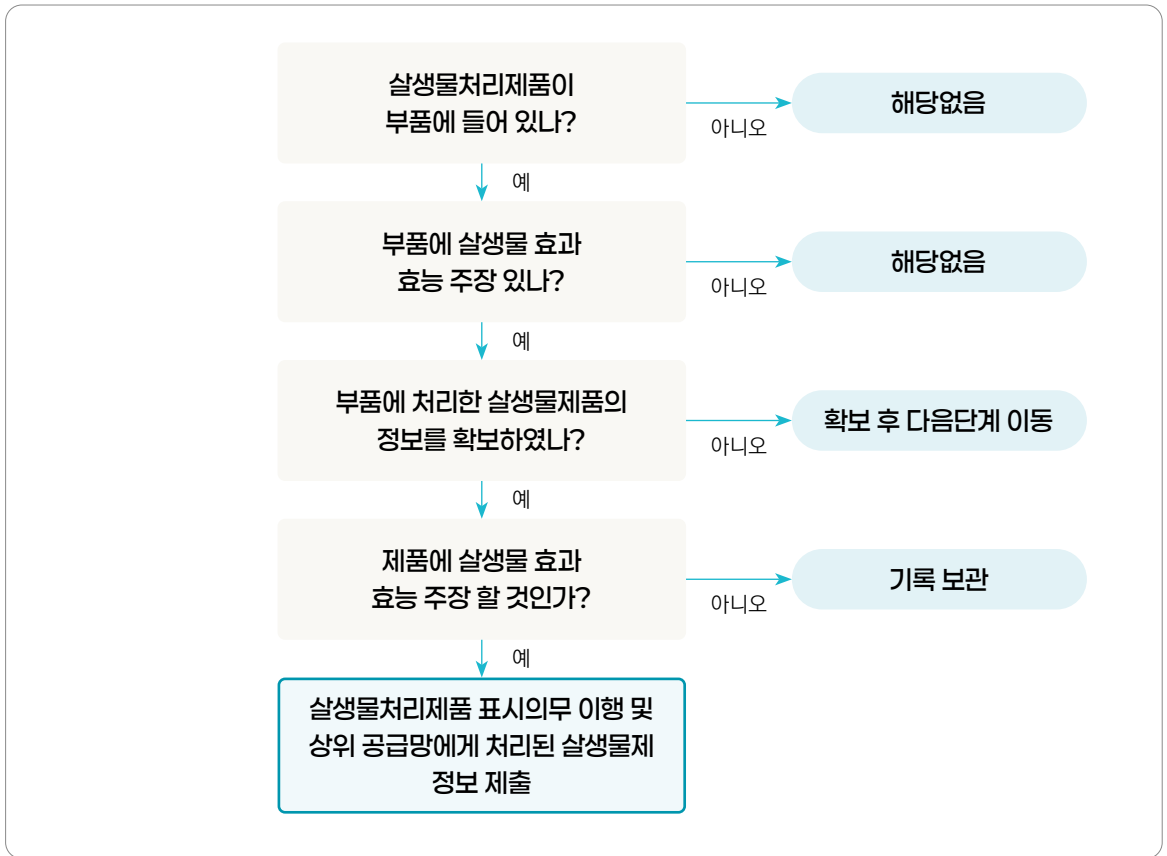
상위 공급망에 **판매하는 부품이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에도 최종적인 가전제품 또한 살생물처리제품이 될 수 있으므로, 상위 공급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급하는 부품이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는 부품의 제작과정에서 살생물제품을 구매하여 직접 살생물처리를 하였거나, **살생물처리제품인 직접부자재를 구매해서 사용한** 경우입니다.

- **(공급사가 직접 살생물처리를 하는 경우)** 살생물처리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과 살생물물질이 적법한 유형으로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품에 대해 살생물처리의 **효과와 효능을 주장할 것인지** 선택하고, 가전제품 제조사 및 상위 공급망의 검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살균·항균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살생물처리제품인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무엇보다 부품 공급사가 자신의 제품(부품)에 대해 살생물처리 제품으로서 **효과와 효능을 주장할 것**이나 하는 점입니다.

- a) **살생물처리제품으로서 효과와 효능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가전제품 제조사에게 **살균·항균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b) **효과·효능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부품에 사용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된 정보만 확보**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는 가전제품 제조사에서 「화학제품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품 공급사가 부품의 생산과정에서 제3의 업체(부품의 부품 공급사)로부터 살생물처리제품인 부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처리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5.2.3. 부품에 대한 표시·광고 의무사항

1차부터 n차 부품 공급사의 경우에도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표시 및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품이 살생물제품에 해당한다면 법 제27조 및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제품 겉면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제품정보를 표시하여 상위 공급망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표시·광고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반면에 부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한다면 살생물처리 효과와 효능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면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니라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품 공급사뿐 아니라 최종 완제품인 가전제품 제조사도 함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살생물처리제품에서는 대중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하며,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이 될 수 있는 표현이나 표현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부품 공급사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광고와 주장을 해야 합니다.

5.3 통신판매업자·중개업자

전자상거래로 유통되는 살균·소독의 목적이 아닌 가전제품은 살생물제품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살균·소독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부품을 장착한 가전제품은 그 자체가 살생물제품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사이버몰에서 가전제품의 부품이 아닌 소모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모품이 화학제품일 경우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품에는 승인된 살생물물질을 사용해야 하며, 살생물제품 자체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물질안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이 과대광고나 주장으로 인하여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표시와 광고 내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하는 제품이 가전제품, 부품, 소모품 가운데 어느 것이건 간에 **제품 제조자가 사용한 살생물 효과와 효능에 대한 광고나 주장을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임의로 살생물 효과와 효능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주장하여 가전제품 제조사나 부품사 등에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가전제품, 부품, 소모품 등의 제품 제조자가 사용한 살생물 효과와 효능에 대한 광고나 주장에 대해 올바른 표현을 하였고, 제품 제조자가 자신의 제품에 대해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변경하거나 추가한광고나 주장 등 영업활동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전제합니다.

5.3.1. 통신판매업자의 의무사항

누구나 가전제품이나 가전제품 부품의 판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품 제조·수입자가 가전제품이나 가전제품 부품을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를 한 것이 되고 이를 업으로 하였다면 **통신판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2호 및 3호).

만일 가전제품 또는 가전제품 부품의 제조·수입자가 가전제품이나 가전제품 부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통신·판매하지 않고, 유통 사업자를 통해서 판매하였다면 유통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이 경우 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유통 사업자에게 가전제품이나 가전제품 부품을 제공하면서, 「화학제품안전법」에 부합하는 광고와 주장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유통 사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하는 광고 및 주장을 했고 이 내용이 가전제품 또는 가전제품 부품 제조사가 제공한 잘못된 광고 및 주장에 근거한다면, 유통 사업자와 제품 제조사 모두 제재의 대상이 되며, 유통 사업자는 제품 제조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품 제조사는 가전제품이나 가전제품 부품에 대한 광고나 주장을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정확히 하여, 유통 사업자의 잘못된 광고 및 주장으로 인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품 제조사가 자신의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내부 자료를 만들어 유통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비록 제품 제조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광고나 주장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유통 사업자의 잘못된 광고 및 주장의 근거가 되므로, 이로 인해 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살생물제품 판매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하는 가전제품의 부품과 소모품 중에는 살균제, 보존제 등의 살생물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살생물제품이 승인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승인된 내역과 다른 주장(효능, 용도 등)을 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살생물제품의 이용자의 사용 후기에 회신하는 경우도 광고에 해당하는 만큼 살생물제품의 벗어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직접 한 광고 및 주장 때문에 살생물처리제품이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가 추가한 광고 및 주장이 살생물제품의 승인된 바와 다를 경우도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도 통신판매업자가 집니다.

■ 살생물처리제품 판매

통신판매업자가 살생물처리제품인 가전제품, 부품, 소모품을 통신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표시 및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통신판매업자가 살생물처리제품인 가전제품, 부품, 소모품에 대하여 임의로 대중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광고 및 주장을 하지 않아야 하며,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이 될 수 있는 표현이나 표현의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 통신판매업자가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해 위와 같은 광고와 주장을 하게 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높고, 「화학제품안전법」에도 저촉됩니다.

더 나아가 통신판매업자가 제품 제조자가 주장하지 않은 살생물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일 통신판매업자가 살생물처리제품인 가전제품, 부품, 소모품 등에서의 살생물 효과를 주장한다면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제품 제조자가 사용하는 광고 및 주장을 넘어서 광고 및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5.3.2.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사항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가 아닙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통신판매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인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제1항).

그러나 위와 같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중개자이면서 동시에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할 때에는 통신판매업자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제3항).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관련 책임을 진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도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제3항).

※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 여부는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신판매업자로 생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7호)을 참고해 주십시오.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지위를 가진다면 ‘3.2. 통신판매업자의 책임과 역할’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 상품등록시 주의사항 고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와 **상품정보를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를 의뢰한 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통신판매 의뢰자와 함께 연대책임이 발생하게 되며(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2), 통신판매중개를 위해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재화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상품정보 등록할 때**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고지**한다면, 통신판매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사이버 몰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이버 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를 준수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의 통신판매행위를 약관에 근거하여 중단할 수 있다**는 중요한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상품정보 등록 전후로 다음 내용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등록 전에는 반드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 ① 통신판매업자는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제조·수입자의 **표시·광고**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등록해서는 **안된다**는 주의사항
- ② ①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 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주의사항(「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 등)
-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등록한 **상품정보**가 「화학제품안전법」 상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약관**에 근거하여 **중개 중단 등 제재**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통신판매업자**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약관**에 명확히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상품등록시 사전고지는 해당 약관의 핵심 내용과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 사이의 계약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계약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물 이용약관**에 통신판매업자의 잘못된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광고** 및 **주장**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통신판매 중개**를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승인** 또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살생물제품**,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해서도 **통신판매중개**를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행정기관이 통신판매업자의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의 위반을 이유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중개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를 위반한 통신판매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약관의 구성에 정해진 형태는 없지만, 통신판매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① **제재 목적의 정당성**, ② **제재 사유의 객관성**, ③ **제재 내용의 적정성**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자의적인 제재를 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정당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를 위반한 통신판매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약관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사이의 약관 내용 중 “**금지행위**”와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는 통신판매업자의 “책임과 의무” 규정에 나누어 규정될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자의 “제재조치”는 “제재절차”와 구분하여 규정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의 약관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약관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약관에 명확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예시 :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사이의 ‘약관’ 중 **관련 내용 예시**

제0조(통신판매업자의 책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의무)

- ① 사이버몰에서 재화와 용역의 판매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가능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재화와 용역에 관한 상품정보를 직접 등록, 관리해야 합니다.

※ [참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품정보 관련 광고 및 주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이 통신판매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4항) 이와 같은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재산적 책임을 부담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 ②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 등 **사이트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법령과 약관 위반 등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으며,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행위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명 요청에 답변** 및 필요 최소한의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④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법령과 약관을 위반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한(또는 동 약관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0조(금지행위)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통신판매 부적합 상품의 등록 · 판매를 금지**합니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 …

제0조(제재 절차 및 조치)

- 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자의 금지행위를 다음의 각호의 방법으로 인지하였을 경우, 제재조치에 앞서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사업자단체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단체의 요청
2.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의 등록상품 관리
3. 사이버몰 이용자의 신고
4. 기타 제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요청내용이 위해 방지의 목적인 경우, 소명에 앞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위해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해제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00일 이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 ④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제재조치 유형	금지행위 유형	비고
1. 통신판매중개업자 개선권고		경미한 안전·표시기준 위반
2. 서비스 제한 1(전시, 검색, 광고 제한)		중요한 안전·표시기준 위반
3. 서비스 제한 2(등록, 판매, 중개 제한)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 제1항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 및 소비자 위해정보에 따른 중개제한 요청 등에 근거
4. 법령 위반사항 공표(거래자 개별공지, 일괄공표)		• 소비자 위해가능성이 높은 경우, 거래기록에 근거한 개별통지 • 소비자 위해가능성이 낮지만, 주의 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일괄공표
5. 거래취소(환불 포함)		중대한 법률위반
6.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계약해지		중대한 법률위반으로 통신판매중개자 책임발생
7. 재가입 차단		중대한 법률위반으로 통신판매중개자 책임발생 및 상습기준 초과

※ 안전·표시기준 위반의 정도, 소비자 위해가능성의 정도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전문기관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5.3.3.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관리행위를 통한 「화학제품안전법」 준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입력하는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 중 잘못된 광고 및 주장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광고 및 주장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정보의 삭제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정정 요청하여야 합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제2항).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제2항에서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을 금지하는데, ①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②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면책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발견하는 즉시 삭제의무는 사용약관**의 금지행위 및 제재절차 및 조치 내용에 **반영**하고 실행함으로써 이행이 가능하고,
-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정보를 토대로 리콜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광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 제1항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제4항)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행위**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상당한 주의**인 동시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는 행위입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제4항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유발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주기적인 관리행위는 사이버 몰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3.4. 판매자 등에 적용될 수 있는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조문 보기

■ 제조·수입자의 법 제20조, 제28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 등 의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 제28조**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등을 받은 경우, 제품승인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법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처리한 제품임에도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과도한 주장을 하면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조·수입·판매·유통자의 법 제34조에 따른 표시·광고의 제한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등 법 제34조의 표시·광고의 제한 규정을 위반 하여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법 제3조제8호 에 따라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미승인 살생물제품 에 해당하므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법 제34조에 따른 표시·광고의 제한은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도 적용되며, 상기 내 용 뿐 아니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무독성”, “환경친화적” “무해성” 등 의 문구의 사용도 금하고 있음

만약 살생물제품에 해당함에도 **제품승인등**(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받지 아니하거나, 법 제26에 따라 제품승인등이 취소되거나 제조·수입이 중지 된 살생물제품, 법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법 제 37조에 따른 회수명령 및 판매금지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법 제56조에 따라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판매·유통자의 법 제35조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승인등(법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받지 아니하거나, 주장·광고하는 살생물제품유형(살충제, 살균제, 보존제 등)에 부합하게 승인을 받지 않아 미승인 살생물제품, 법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제품, 법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은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면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명령 및 판매금지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법 제58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 법 제35조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는 살생물제품이나 살생물처리제품 뿐 아니라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생활화학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조·수입·판매·유통자에게도 적용

살생물처리한 제품임에도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과도한 주장을 하면 미승인 살생물제품이 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임의로 제품의 표시·광고 내용을 변경하면 그 책임이 판매자에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한편,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면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하는 자에게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판매 등의 금지)의 내용〉

항	각호	각호의 내용
①항	1. 생활화학제품의 판매 등의 금지	가.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법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 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법 제10조제4항) 라.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법 제10조제8항)
	2. 살생물물질의 판매 등의 금지	가. 물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나.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법 제17조)
	3. 살생물제품의 판매 등의 금지	가. 제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나.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법 제26조) 다.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살생물제품(법 제27조)
	4.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 등의 금지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법 제28조)
②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조·수입·판매·유통자의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명령 등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판매 등이 금지되는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 37조에 따라 회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제조·수입·판매·유통자의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포상금

또한,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한 자는 법 제52조의 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4 가전제품 제조사 및 부품 공급사에 적용될 수 있는 「화학제품안전법」 처벌조항

5.4.1. 부품 또는 제품이 살생물제품인 경우

① 법 제20조 및 제26조 등 제품승인 위반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승인 취소 또는 제조·수입이 금지된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제57조에 따라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법 제23조, 제25조 및 제27조 변경승인 및 표시기준 등 위반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정보, 효과·효능 등의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 받는 등 변경승인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제57조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법 제34조 표시·광고의 제한 위반

살생물제품인 가전제품이나 부품에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광고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제품명,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효과·효능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④ 법 제49조 기록·보존·보고의 위반

법 제36조에 따라 새로운 유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법 제49조에 따라 제조·수입한 살생물제품의 명칭·제품명 및 수량,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에 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하고,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을 2년마다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기록·보존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고한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자는 법 제60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4.2. 부품 또는 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

① 법 제28조 안전·표시기준 위반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승인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또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및 승인유예 중인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제57조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습니다.

살생물처리제품에 **요구되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게 표시한 경우**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제57조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법 제30조 정보 제공 등 위반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전제품 제조사가 가전제품이나 제품을 구성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인 부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처리제품 제조·수입자나 부품 공급사에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③ 법 제34조 표시·광고의 제한 위반

살생물처리제품인 가전제품이나 부품을 살생물제품처럼 광고하거나 주장한 경우 법 제58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법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④ 법 제49조 기록·보존의 위반

법 제49조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과 사용량에 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살생물처리제품의 제조·수입자는 법 제6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Part

3

가전제품 부품 유형별 관리 방법

-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부품
- 2 현장발생형 살생물제 부품
- 3 비화학적 방법에 의한 미생물 억제·저감 부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부품

- ◆ 가전제품의 부품중에는 현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관리중인 품목이 일부 존재함
- ◆ 그중 항균처리된 필터, 전기분해형 살균기 부품 등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해야하는 품목에 해당하고, 가습기 관련 부품 등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에 해당함

1.1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부품

1.1.1.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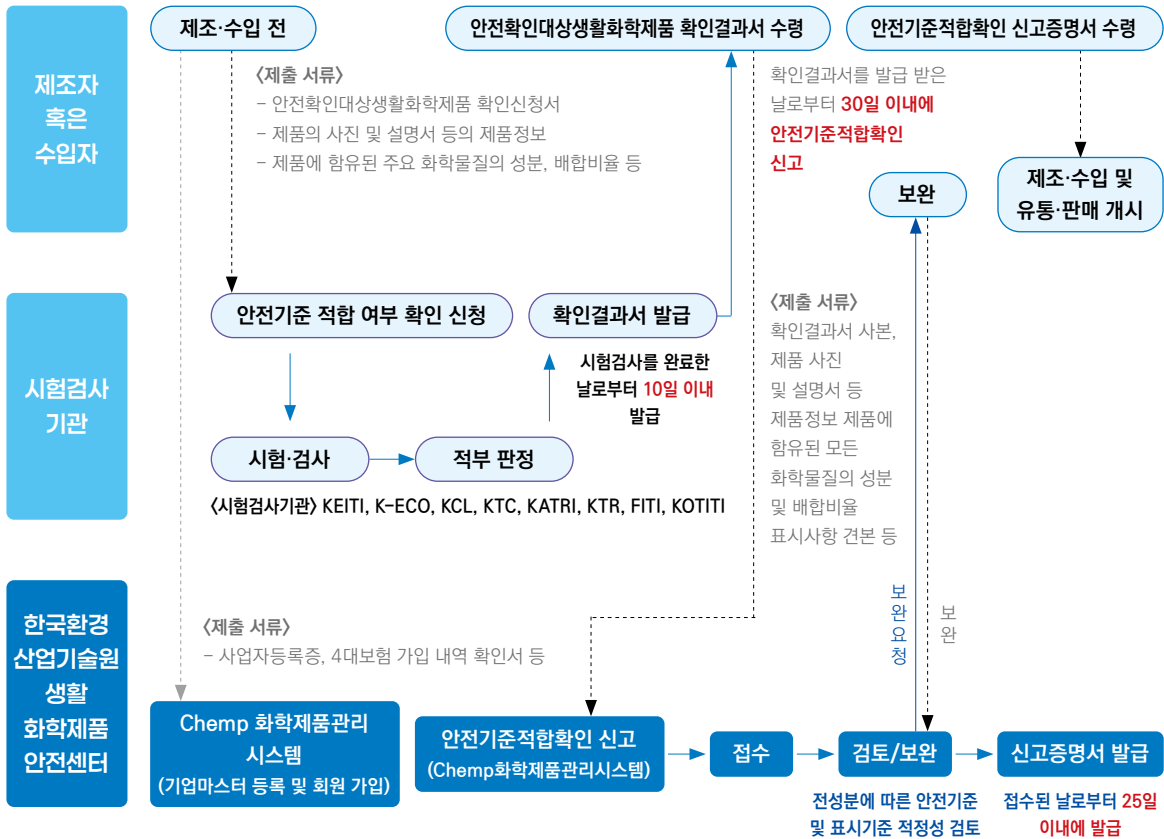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제품내 함량, 용기·포장·중량, 어린이보호포장 등) 준수 여부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FITI시험연구원
- ▶ KATRI시험연구원
- ▶ KOTITI시험연구원

다만,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 동일한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https://chemp.mcee.go.kr/>)을 통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하여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발급받은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신고번호를 제품에 표시하여 시장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제출서류〉

안전기준 적합 확인(시험·검사기관)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3.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갱신시)

신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3.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4.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5.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표시견본

1.1.2.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장착되는 공기정화용 필터는 현재 「화학제품안전법」 제5조, 제10조 및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출시하기에 앞서 제품내 함유금지물질 및 함량기준 등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확인을 하고, 확인결과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와 함께 필요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고된 내용에 따라 제품 겉면 및 포장 등에 규정된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균처리 필터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제형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분사형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분사형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분사형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분사형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분사형
6	염화벤잘코늄류 ¹⁾	분사형
7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분사형
8	관련 법령의 사용금지물질(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전 제형

¹⁾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항균처리 필터내 사용가능 보존제물질 방출량¹⁾ 기준〉

(단위 : mg)

연번	물질명	안전기준 ²⁾
1	이산화티타늄	1,000 이하
2	이산화규소	40 이하
3	구리 및 그 화합물	구리로써 70 이하
4	산화아연	50 이하
5	질산은	15 이하
6	아연 피리싸이온	70 이하
7	옥타데실디메틸(3-트리하이드록시실일프로필)암모늄클로라이드 (Octadecyldimethyl(3-trihydroxysilyl propyl)ammonium chloride, OTPA)	2 이하

¹⁾ 공기청정기·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필터에서 탈락된 해당 물질의 양

²⁾ 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보존제물질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해성평가를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 결정(고시 별지 제9호 서식)

만약 항균처리 필터내 사용가능 보존제물질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보존제물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해당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섬유·가죽류용 보존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고시 별지 제9호서식의 필터형 보존처리제품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와 함께 유해성 자료 및 물질별 방출량에 따른 위해성 평가자료 등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항균처리된 공기정화용 필터를 장착한 가전제품(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의 경우 제품 겉면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균처리 필터” 표시라벨 예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CB24-25-0001

품목: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제품명: 공기청정기용 필터
용도: 공기청정기용	제형: 필터형
제조연월: 별도표기	중량·용량·매수: 300×200mm

제조사, 주소, 연락처: (주)코리아,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11-1, 02-987-1234

사용 물질

주요물질: 폴리프로필렌	보존제: 구리
--------------	---------

사용방법

- ① 포장을 제거한 후, 필터를 장착부에 삽입하여 주세요.
- ② 제품 개봉 후 바로 장착하여 사용하세요.

사용상 주의사항

- ① 필터는 사용환경에 따라 교체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② 사용하기 전에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 ③ 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 ④ 화기에 가까이 하지 마세요.
- ⑤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응급처치

- ①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 ②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보여주십시오.

항균처리필터 업체 의무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통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필터 제품 판매 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6 참고

1.1.3. 전기분해형 살균기

청소기, 비데 등의 가전제품에 부품으로 장착된 전기분해형 살균기 또한 「화학제품안전법」제5조, 제10조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고시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살균제(전기분해형 살균기용)”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분해형 살균기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제형	검출 허용한도
1	벤젠	전 제형	5 이하
2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3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전 제형	- ¹⁾
4	수은	전 제형	1 이하
5	산화에틸렌	전 제형	- ¹⁾
6	아크릴산	전 제형	- ¹⁾
7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분사형	
8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분사형	
9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분사형	
10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분사형	
11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분사형	
12	염화벤잘코늄류 ²⁾	분사형	
13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분사형	
14	관련 법령의 사용금지물질(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전 제형	

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²⁾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전기분해형 살균기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폼알데하이드	40 이하	100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100 이하	200 이하
3	클로로포름	30 이하	30 이하
4	1,2-디클로로프로판	50 이하	200 이하
5	산화세륨	세륨으로써 1,000 이하	세륨으로써 1,500 이하
6	1-메톡시-2-프로판올	8,000 이하	10,000 이하

〈전기분해형 살균기 제품내 사용가능 주성분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안전기준		
		일반물체형	물걸레 청소기용	변기 수조용
1	유효염소 ¹⁾	0.019 이하	0.008 이하	0.0025 이하

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조제1항에 따른 전기분해방식으로 수돗물, 염화나트륨, 염산으로부터 생성된 활성염소

또한 전기분해형 살균기를 장착한 가전제품(청소기, 전해수기, 비데 등)의 경우 제품 겉면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기분해형 살균기” 표시라벨 예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CB24-21-0001

품목: 살균제

제품명: 전기분해형 살균수 발생장치

용도: 전기분해형 살균기용(변기 수조용)

제형: 분무기형, 기타(자동분사형)

제조연월: 별도표기

중량·용량·매수: 최대 300 cc/min

제조사, 주소, 연락처: (주)코리아,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11-1, 02-987-1234

사용 물질

주요물질: 물, 유효염소

사용방법

- ①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십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 ① 변기 뚜껑을 내리고 물을 내리시오.
- ② 공기 소독(연무 소독, 고압분사용 소독장비 활용하는 경우 포함)의 용도 사용을 금지하오니, 물체 표면에만 사용하십시오.
- ③ 내용물을 마시거나, 내용물이 눈 또는 피부에 닿을 경우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④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⑤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분사)하지 마시오.
- ⑥ 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 ⑦ 다른 제품과 섞어 사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섞어 사용하지 마시오.
- ⑧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응급처치

- ①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보여주시오.
- ② 제품에 직접 노출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십시오

전기분해형 살균기 업체 의무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통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전기분해형 살균제품 판매 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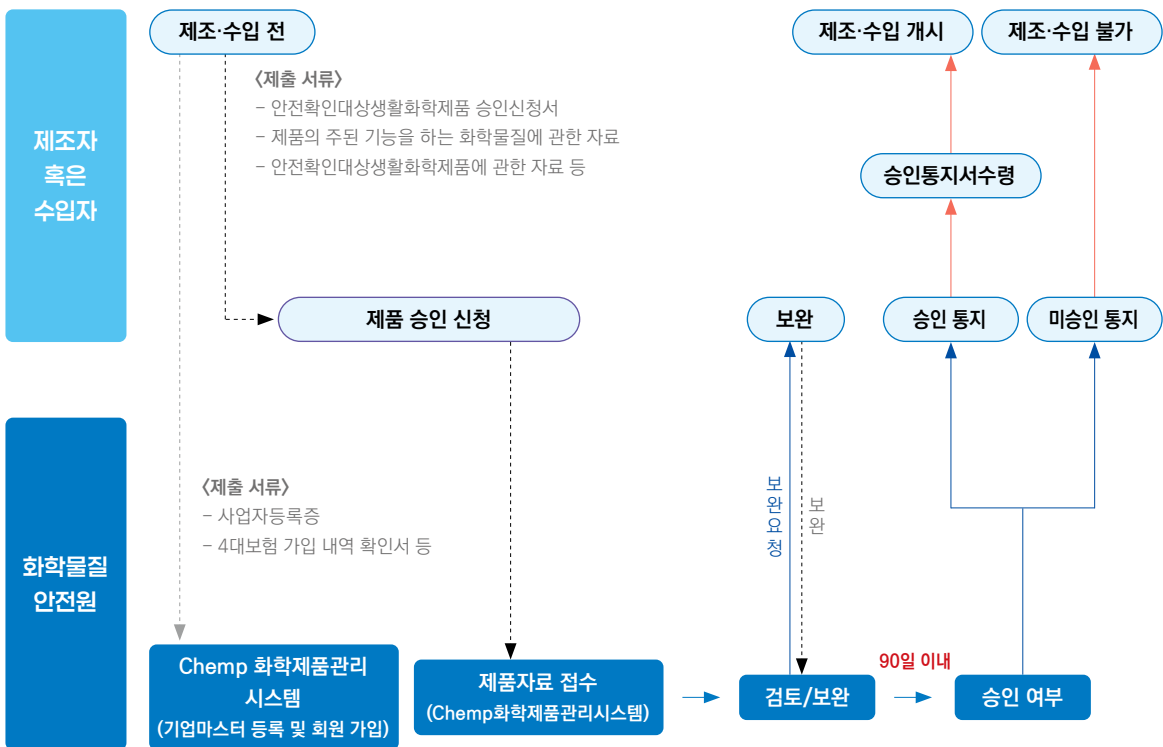
※ 다만, 전기분해형 살균기(신고된 제품 포함)는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살균제” 유형으로 유효기간 내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함

1.2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부품

1.2.1. 승인 방법 및 절차

「화학제품안전법」 제9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따라 해당 제품내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절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 자료	주요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1. 신청인 일반정보 2. 신청제품정보(제품명, 품목, 제형 등)
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1. 화학물질의 식별정보(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2. 화학물질의 용도 3.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4.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5. 화학물질의 유해성 6. 화학물질의 노출경로, 노출행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자료	1. 효과·효능 2. 해당 제품의 유해성 3. 해당 제품의 성분 분석에 관한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 4. 안전한 사용에 관한 자료(해당 제품의 안전성, 폭발·화재·노출시 응급조치사항 및 보호구 등)

승인이 완료되면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승인통지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때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반드시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중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은 법 제3조제8호의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므로 제품 유형에 따라 반드시 살생물제품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을 받은 제품도 법 제20조 등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1.2.2.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에 사용된 생활화학제품 및 보존처리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제5조, 제7조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승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승인신청자료 및 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개요〉

품목	사용목적	구분	제형	재질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 내 부품 자체의 보존	살생물처리제품	필터	부직포 등
			수조	플라스틱 등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 질명	제형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분사형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분사형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분사형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분사형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분사형
6	염화벤잘코늄류 ¹⁾	분사형
7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분사형
8	관련 법령의 사용금지물질(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전 제형

¹⁾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이와 같은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승인신청 시에는 제품내 함유된 성분과 독성자료, 위해성 및 효과·효능 자료, 용출시험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승인신청자료 요약〉

품목		제출 자료					추가 제출 자료
		성분 분석	독성	위해성	효과 효능	용출 시험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용출기준 이상	○	△	○	○	○	제품가동 조건 반복흡입독성
	용출기준 이하	○	△	-	○	○	-

○ : 승인신청시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

△ : 승인신청시 자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

- : 승인신청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용출기준

(단위 : mg/L)

Ag	Zn		Cu	Si	Ti
	Zinc Oxide	Zinc Pyrithione			
0.0003	0.013	0.0006	0.0008	0.23	0.04

* 용출기준 항목 5종 외의 물질 사용시 위해성평가 결과 첨부

또한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및 보존처리제품의 경우 제품 겉면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및 보존처리제품 업체 의무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절차를 통해 승인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및 보존처리제품 판매 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6 참고

현장발생형 살생물제 부품

- ◆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살생물물질이 생성되는 부품이 장착된 가전제품 존재
- ◆ 가전제품내 주로 사용되는 현장발생형 살생물제에는 전기분해형 살균기, OH라디칼 발생장치 등이 있음
- ◆ 현장발생형 제품은 소비자 안전성 및 제품의 효과·효능이 현재 국제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제한점이 존재함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 및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화학물질안전원)에 따라 현장발생형 살생물물질은 OH 라디칼, 전기분해에 의해 생성된 활성염소 또는 이산화염소, 알칼리이온수, 테트라아세틸에틸렌디아민(TAED)과 과탄산나트륨에서 생성된 과초산 등으로 '29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유예대상 현장발생형 살생물물질 예시〉

연번	승인유예대상 현장발생형 살생물물질 예시	CAS No.
1	Hydroxyl radical	3352-57-6
2	Ozone generated from oxygen	10028-15-6
3	Chlorine dioxide generated from sodium chlorite by acidification	10049-04-4
4	Chlorine dioxide generated from sodium chlorite by oxidation	10049-04-4
5	Chlorine dioxide generated from sodium chlorite by ultraviolet rays	10049-04-4
6	Superoxide	11062-77-4
7	Active chlorine generated from chloride of ambient water by electrolysis	고유번호 없음
8	Active chlorine generated from hydrochloric acid by electrolysis	고유번호 없음
9	Alkaline ionized water	고유번호 없음

연번	승인유예대상 현장발생형 살생물물질 예시	CAS No.
10	Free radicals generated in situ from ambient air or water	고유번호 없음
11	Peracetic acid generated from tetra-acetythylenediamine (TAED) and sodium percarbonate	고유번호 없음
12	Active chlorine generated from sodium chloride by electrolysis	고유번호 없음

2.1 OH라디칼 발생장치 부품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 및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OH라디칼, 활성산소 등 현장에서 생성되는 살생물물질은 '29년 12월까지 “살균제” 유형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를 한 기업의 물질·제품에 한해 원료 및 부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고기업 현황('25년 8월 기준)

- ▶ Hydroxyl radical: 서울바이오시스(주) 등 26개 기업
 - ▶ Free radicals generated in situ from ambient air or water: (주)두원전자 등 32개 기업
-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공지사항 중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및 승인유예대상 신고기업 목록 알림”을 통해 확인 가능

다만, OH라디칼의 경우 현재 정량적 분석 및 독성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외에서도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물질 자체의 반응성이 커서 세포·DNA 손상 등을 통해 암, 노화 촉진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평가기간 및 비용 등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과 소비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승인을 통해 안전성 및 효과·효능이 확인되기 전까지 OH라디칼 생성 부품의 장착은 지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OH 라디칼 생성 부품을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경고문구(부품을 분해하지 마시오 등)를 표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2.2 이산화염소 발생 부품

공간 및 물체 등의 살균을 위하여 일정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이산화염소 가스를 방출하는 제품의 경우 현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제품의 사용 특성 및 용도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산화염소 발생 장치를 부품으로 장착한 가전제품의 경우 앞서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부품'의 설명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구분	대상 제품	관리기관
신고대상 (살균제)	인체 접촉 및 호흡노출 우려가 낮은 특정 밀폐공간용 제품 (배수관용, 냉장고용, 신발·옷장용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승인대상 (기타 제품)	인체 접촉 및 호흡노출 우려가 높은 생활공간용 제품 (실내공간용, 차량용 등)	화학물질안전원

다만, 신고대상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여 위해성이 우려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3 전기분해에 의한 활성염소 발생 부품

전기분해방식을 이용하여 염산, 염화나트륨 등으로부터 생성된 활성염소를 이용하여 살균·항균 기능을 부여하는 부품을 가전제품내 장착한 경우에는 살생물물질·제품으로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중 살균제 품목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고 이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에 대한 사항은 앞서 수록된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부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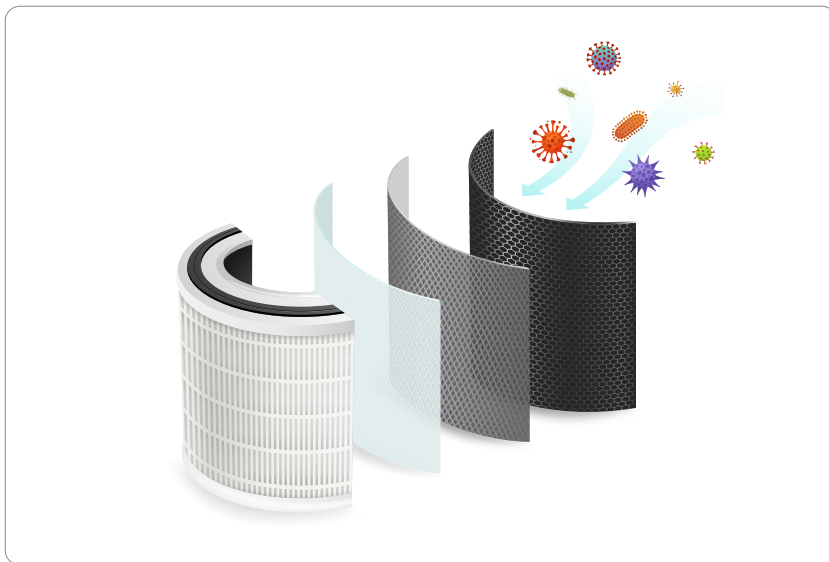
비화학적 방법에 의한 미생물 억제·저감 부품

- ◆ 살생물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화학적 살균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생물 억제 기능을 지닌 가전제품 존재
- ◆ 부품의 형태, 물리적 특성, 고열 효과 등을 이용하여 미생물 억제 기능을 구현하는 부품들이 이에 해당함
- ◆ 살생물제 안전관리 범위에는 제외되나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학적·실험적으로 입증된 효과·효능에 대한 광고를 해야 함

3.1 비화학적 방법에 의한 미생물 억제·저감 부품 종류

3.1.1. 여과 및 흡착 등을 통한 미생물 저감

박테리아 크기 이하의 포집 효과 또는 전하를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흡착하는 형태 등의 필터 제품은 살생물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미생물 저감 방식을 명확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3.1.2. 고열 스팀을 이용한 미생물 억제

고온의 증기 등을 이용하여 세균과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거나, 미생물의 세포막을 파괴하여 세포를 사멸 또는 미생물의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효소를 비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살균·항균 기능을 하는 제품은 살생물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1.3. 자외선(Ultra Violet) 살균

자외선(UV) 소독 장치는 자외선의 효과를 통해 바이러스, 박테리아 및 원생동물의 DNA와 RNA를 손상시켜 유기체의 증식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살생물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촉매 등을 이용하여 물 속의 산소 또는 과산화수소 등과 같은 물질을 활성화하여 오존, 라디칼 등 생성을 통해 살균·항균 기능을 발휘하는 UV 제품의 경우 살생물제에 해당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2 비화학적 방법에 의한 미생물 억제·저감 부품의 관리

이와 같이 비화학적인 방법을 통해 살균·항균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은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거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규정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와 같은 제품들은 살생물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제품에 살균·항균기능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반응이 아닌 비화학적인 작용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과·효능을 광고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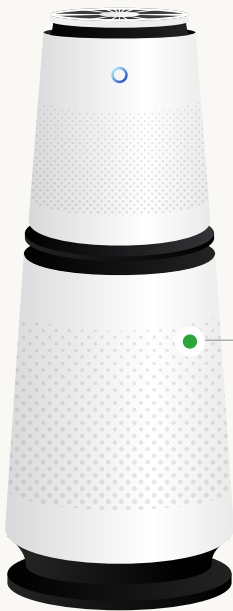
따라서 비화학적 방법을 통한 살균·항균 기능을 하는 부품의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타법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준수하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독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살생물물질이 사용되지 않고 살균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제품임을 주요 광고 포인트로 활용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함을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Part

4

가전제품 항균처리 광고 사례

1 공기청정기



필터

사례 1

항균,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원단 필터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개선안

필터의 미생물 성장 억제를 위해 항균처리된 원단 필터

사례 2

필터 내 바이러스/세균 99.99% 감소
: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개선안

필터 내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사례 3

집진필터에 항균소재 적용으로 필터 성능 및
위생성 강화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개선안

집진 필터에 항균처리 소재를 적용하여 필터의 보존 성능
강화

사례 4

산화아연 항균섬유로 제작된 집진필터로 필터 내 세균
증식 억제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개선안

산화아연으로 항균처리된 섬유로 제작된 이 집진필터는
필터 내 미생물 증식 억제에 효과적임

사례 5

집진필터에서 황생포도상구균, 폐렴간균 99.9% 증식 억제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개선안

구체적 균주명, 99.9% 삭제



노즐/도기
관리용
전해수기

변좌

사례 1

살균 비데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개선안

'살균' 삭제

사례 2

유로 전해수 살균, 물통 전해수 살균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개선안

전해수 살균기는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므로 승인을
받아야 함

사례 3

대장균/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을 99.9% 살균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개선안

구체적 "균주명", "99.9% 살균" 삭제 또는,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부품에 국한된 효과·효능임을 명확히 기재

사례 4

99% 살균으로 매일 새 비데 수준의 손쉬운 위생관리를
경험해보세요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개선안

"99% 살균", "위생관리" 삭제 또는,
자체 전해수 방출 기능을 통해 비데의 유로-노즐-도기에
미생물 증식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례 5

99% 항균시트
: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개선안

'99.9%' 삭제, 항균처리된 시트

3 냉장고



사례 1

안심 항균 핸들
: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개선안

(항균 삭제) 냉장고 손잡이에 항균처리가 되어 세균이 잘 자라지 않게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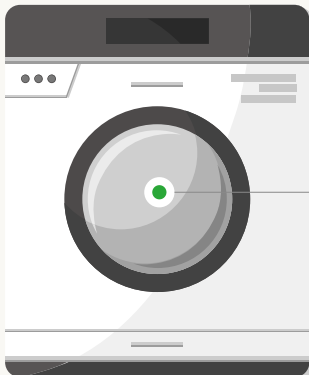
사례 2

항균 탈취필터의 냄새 원인균 제거를 통한 강력한 탈취 효과로, 냉장고 안 음식 냄새를 잡아줍니다.
: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개선안

항균처리된 탈취필터를 통해 냉장고 안의 악취를 잡아줍니다.

4 세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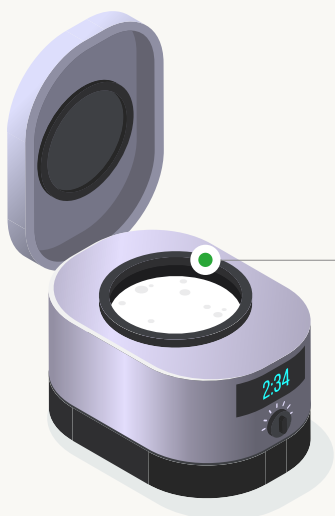
사례 1

은이온 항균 세탁기 자체가 세탁물의 오염도를 파악하여 세탁물 구석구석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개선안

(항균 삭제) 은이온 항균처리가 세탁기에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5 전기밥솥



내솥

사례 1

항균 곰팡이 방지 수지 재질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개선안

(항균 삭제) 항균처리된 수지를 사용하여 부품에
곰팡이가 잘 자라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6 청소기



먼지봉투

사례 1

항균 먼지봉투
: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개선안

항균처리된 먼지봉투

청소포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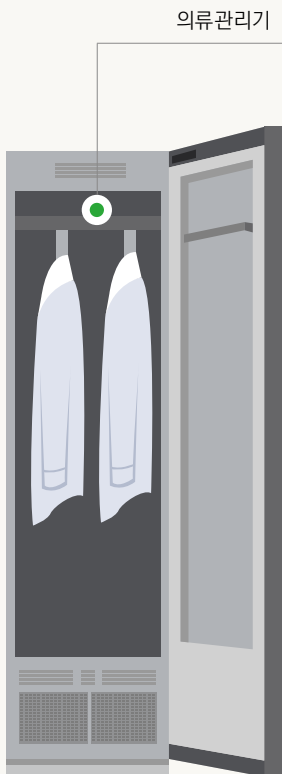
항균 다회용포
: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개선안

항균처리된 다회용포

7

의류관리기/신발관리기



사례 1

바이러스 99.99%, 세균 99.9% 살균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개선안

“99.9%” 삭제 및 제품보호 명시

사례 2

빠르게 살균하는 청정 의류케어
: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개선안

“살균” 삭제

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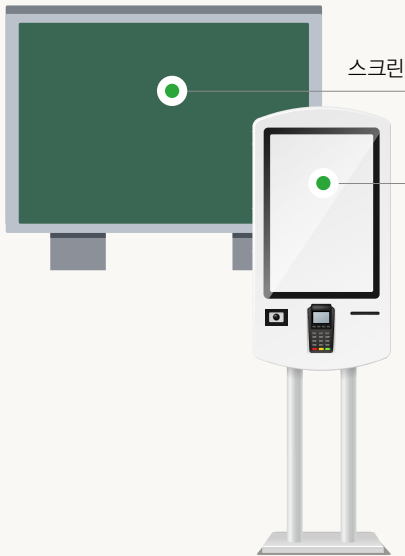
옷감 속에 남아있는 바이러스와 세균까지 효과적으로 살균해줍니다. 바이러스(인플루엔자A 등 10종, 세균(황색포도상구균 등 9종). 집먼지진드기 제거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개선안

“살균”, 특정 균주명 삭제

8

전자칠판/키오스크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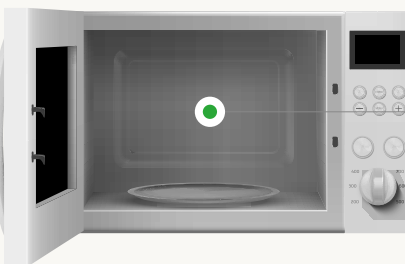
항균 코팅
: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개선안

항균처리 코팅

9

전자레인지



사례 1

포도상구균, 폐렴간균 99.9% 항균 인증 :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개선안

항균처리로 제품 내벽에 미생물이 자라는 것을
억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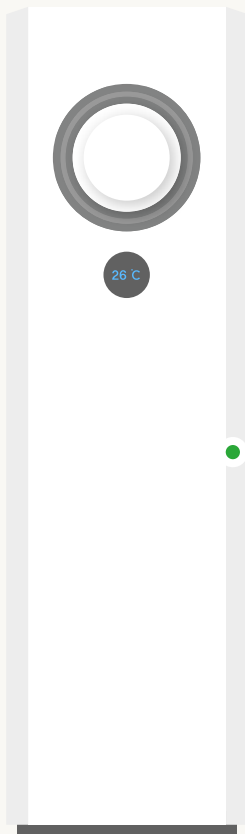
사례 2

항균 작용으로 위생적이며
: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개선안

(“항균” 삭제) 항균처리가 된 내벽은 세균
억제와 냄새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10 에어컨



필터

사례 1

항균구리 극세필터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개선안

구리로 항균처리된 극세필터

사례 2

유해 세균 99.9% 항균 가능한 항균 구리 극세필터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개선안

(99.9% 삭제) 구리로 항균처리된 필터가 필터 내 세균번식을 억제해 줍니다

사례 3

시험결과 : 항균구리 극세필터에서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간균 99.9% 증식 억제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개선안

구리로 항균처리된 극세필터가 필터 내 세균번식을 억제해 줍니다

사례 4

항바이러스/항균 99.9%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개선안

광고 문구 삭제

사례 5

먼지를 걸러내는 극세필터에 항균처리를 해서 먼지에 있는 세균의 번식까지 억제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개선안

먼지를 걸러내는 극세필터에 항균처리하여 필터에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Part

5

묻고 답하기 (Q & A)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제품 신고·승인 및 표시방법

Q.1 살생물제에 해당하는 물질 및 제품들의 경우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만 하면 사용 시 문제가 없는지?

- ▶ 가전제품의 주 사용 보존제(제품보존용·제품표면처리용·섬유가죽류용 등)는 현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된 경우, '27.12월까지 물질승인, '29.12월까지 제품승인을 받아야 함 (단, 제품승인 신청을 '28.12월까지 한 경우 '30.12월까지 승인유예기간 연장)
- ▶ 이에 해당 경과조치 기간 내 살생물물질·제품의 사용은 가능하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신고(살균제(현장발생형 등),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또는 안생품 승인 제품(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생활화학제품)인 경우 해당 제품 수입·제조 전 법 제1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안생품 신고 및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승인 필수

Q.2 가전제품에 장착하는 필터에 보존제 물질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표시라벨 부착 방법은?

- ▶ 보존처리된 필터는 현재 안생품 신고 제품으로 관리 중이며, 완제품 판매 시 가장착된 필터의 경우 완제품의 포장 겉면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 별도 판매되는 필터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별표6의 표시방법에 따라 제품 겉면에 표시하되, 표시면의 면적이 좁아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내용(고시 별표 6, 표1 참고)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첨부문서로 표시 가능
- ▶ 제품 겉면에 표시된 표시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함

Q.3 가전제품의 홍보물에 “살균”, “항균” 단어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인지? 살생물제품이 부품인 경우 부품명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 ▶ 해당 부품이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인 경우 제품명에 “살균”, “항균” 단어의 사용이 가능하나,
 - 해당 문구가 살생물처리제품명에 사용되는 경우는 사용자가 해당 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 및 제34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됨
- ▶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직접적인 살균, 항균기능이 있다는 주장이 아닌, 제품 자체의 보존이나 보호만을 목적 항균처리가 되었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Q.4 살생물처리제품 제품명에 “항균처리”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 ▶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광고에는 “항균처리된 부품명” 등 제품 자체에 처리되었다는 표현은 가능하나, 제품명에는 “항균” 이라는 표현이 주기능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제품명에 사용해서는 안됨

Q.5 “위생”, “위생적이다” 등의 표현은 사용해도 되는지?

- ▶ 항균 효과로 인한 “위생적”이라는 주장을 제품 자체의 보존이나 보호에 대한 명시없이 표현하는 것은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으로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음

Q.6 항균처리 시 효과·효능에 대한 구체적 군주명 또는 수치 주장을 해도 되는지?

- ▶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생물의 종류를 명시하거나 해당 생물을 제거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제품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와 살생물기능(제품이외의 대상에 대한 유해생물 제거 기능)을 주장하면서 99.9% 제거 등 구체적인 효능을 주장하는 경우는 살생물제품의 판단 기준인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주장에 해당되므로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광고에는 부적절한 표현임

※ 미국 FIFRA의 경우 특정 유해생물과 연관된 주장을 할 경우 살생물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로 보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Pest Control Products Act에 따라 보존제의 승인된 라벨에 명시되지 않은 특정 병원균을 처리제품에 표방하는 것은 금지됨

3

현장발생형 살생물제 관련

Q.7 현장발생형 살생물제품의 승인주체는 “완제품 가전 제조·수입사”인지, “부품을 제조·수입하는 부품사”인지?

- ▶ 현장발생형 살생물물질·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물질 및 제품승인 대상이며, 완제품 가전제품에는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고, 완제품 판매 시 완제품의 포장 겉면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살생물제품 표시사항을 기재하여 구매자에게 살생물제품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4

승인 경과조치 및 책임소재

Q.8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효기간 종료 후 안전·표시기준 규제의 시행 시점이 제조·수입일 기준인지, 판매일 기준인지?

- ▶ **(제조·수입 기준)**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경과조치 기간까지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가능
- ▶ **(판매·증여 기준)** 상기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4조의2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의 경과조치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 및 증여, 또는 판매 및 증여를 위한 진열, 보관을 허용하고 있음
- ▶ 단, 해당 규정은 경과조치기간(처리제품 제조·수입)이 종료한 이후 6개월까지 제품의 자유로운 판매·유통의 의미가 아닌,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부적합 제품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것임

Q.9 부품 제조사가 살생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소재는?

- ▶ 미승인 살생물물질·제품이 사용된 경우 살생물물질·제품 제조·수입자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자도 법 제28조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 단, 고의성 여부의 판단에 의해 벌칙(징역 또는 벌금형)의 수준은 조정될 수 있음
- ▶ 이에 살생물물질 및 제품 등 원재료 제조자의 제품승인 규정 등의 「화학물질제품법」 제도이행에 대한 인식 및 노력과 완제품 제조과정의 협력사 간 살생물제 정보전달 및 확인이 필수적임

Q.10 원재료(협력사) 제조 업체에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하지 않고 제품에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벌금이나 처벌 등이 있는지?

- ▶ 승인받지 않은 살생물물질 또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되지 않는 물질 등이 포함된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은 제조·수입·판매·유통이 금지되어 있음
- ▶ 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한자는 회수, 폐기 조치와 법 56~58조에 따른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대상임

Q.1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하면 유예기간 동안 물질의 사용이 가능한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고 시 계속 사용 가능한지?

- ▶ 살생물물질 승인유예 기간 내에 화학물질안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유예기간의 연장 신고 규정 및 절차 없음

Q.1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기업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살생물물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 ▶ 제품 내에서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물질이 있다면 이는 살생물 물질에 해당함
- ▶ 이 물질을 승인유예 받기 위해서는 업체 스스로 화학물질안전원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 물질로 신고하여야 함
- ▶ 이에 해당 업체가 사용하는 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사로부터 추가로 신고하게끔 안내해야함

Q.13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되지 않은 살생물물질을 사용할 경우, 신고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 ▶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신고내용 및 필요서류 등은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명시됨
- ▶ 또한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old.keiti.re.kr/>) 종합자료실에서 살생물제 안전관리 개요 및 승인절차 등에 대한 각종 자료 참조 가능

Q.14 해외에서 수입되는 살생물물질의 경우, 국내에서 수입하는 기업에서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하면 되는 건지?

- ▶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 주체는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므로 국내 수입 기업에서 신고 가능함
- ▶ 또한, 국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는 자는 요건을 갖춘 자(국내 국적 또는 국내 주소(법인은 영업소 소재지)를 가진자)를 선임하여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 신고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 ▶ 상기 사항에 따라 국내·외 기업에 의해 신고된 물질은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제품 내 사용이 가능함

Q.15 사출물 내 오일(살생물물질 해당)을 바르는데 외부에 직접적인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로 신고해야 하는지?

- ▶ 국내에서 제품 내 사용하기 위해 제조·수입되는 살생물물질 및 제품은 인체 노출 가능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물질 및 제품승인을 받아야 함
- ▶ 이에 승인유예기간(살생물제품의 경우 경과조치기간) 동안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없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가 필요함

Q.16 가전제품 내 장착되어 있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해당 살생물제품 내 포함된 살생물물질에 대한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 신고 주체 및 기관, 비용/소요기간 등은?

- ▶ 살생물제품 승인 및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 신고는 해당 제품 및 물질의 제조·수입업체가 이행 주체임
- ▶ 살생물제품 승인에 대한 소요비용 및 기간은 해당 물질의 정보 확보 용이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 신고는 별도의 소요 비용 없음
- ▶ 업체가 화학물질안전원에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를 하면,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하여야 함
-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고시에 이미 등재된 물질인 경우 업체 추가 등록만으로 가능(수일 내 신고 완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승인이행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승인이 필요한 독성자료 생산·저가 제공은 생산 단가의 3~5%, 효과·효능 및 성분 분석 비용은 실비로 시험단가의 70~90%를 지원 중임

Q.17 가전제품 부품이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살생물제품 정보(라벨)는 해당 부품에만 부착하면 되는지?

- ▶ 완제품에 장착되는(탈부착형) 부품이 살생물제품인 경우, 살생물제품 표시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살생물제품 겉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 ▶ 표시면의 면적이 좁아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내용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 또는 제품 포장에 표시하여야 함
 - ▶ 제품 겉면에 표시된 표시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함
- ※ 세부내용 「살생물제품 표시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참고
- ▶ 완제품의 기 장착된 부품이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완제품의 포장 겉면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

6 **살생물처리제품 안전·표시기준 등 관리**

Q.18 살생물처리제품 내 승인된 살생물제품 사용했는지 준수 여부 확인 등 정부의 시장 내 사후관리 계획은? (항균 효과 미홍보시)

- ▶ 살생물제품으로 처리된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효율적 시장 감시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학물질안전원, 지방·유역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사후관리로 시장 내 승인된 살생물물질과 제품만이 유통·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임

Q.19 살생물제 관련 가전제품의 라벨링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 ▶ **(안생품)** 공기청정기 등에 사용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및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등은 안생품 신고 및 승인제품에 해당하여「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에 따라 표시사항 기재
- ※ 세부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참고
- ▶ **(살생물제품)**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살생물제품 승인경과조치 기간 후에는 해당 가전제품이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27조 및 「살생물제품 표시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표시방법에 따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세부내용 「살생물제품 표시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참고

- ▶ **(살생물처리제품)** 상기 안생품을 포함한 살생물처리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4조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 표시사항을 기재

Q.20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완제품 상에 표시 및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 ▶ **(표시기준)**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품 내 보존기능 등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하고(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 해당 제품의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 살생물물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제품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 ▶ **(정보제공)** 「화학제품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제조·수입하는자에 청구 가능, 해당 제조·수입자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제공 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함

Q.21 직구 살생물제품 또는 처리제품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 ▶ 경과조치 규정이 만료된 미승인 살생물제품 또는 이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을 직구 제품으로 구매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를 사용하여 살생물제품 또는 처리제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경우 「화학제품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모니터링 및 불법제품 판매 차단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캠페인,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가전제품편)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044-201-6828
디자인·인쇄	이안테크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가전제품편

